

발 간 등 록 번 호

11-1140100-000147-01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관련 데이터베이스 활용방안 연구

2016. 12.



국민권익위원회



韓國政策學會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제 출 문

국민권익위원회 귀중

본 보고서를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관련 데이터베이스 활용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12월

책임연구: 황윤원(중앙대학교)

공동연구: 허만형(중앙대학교)

연구보조: 윤치중(중앙대 석사과정)

연구보조: 김은경(중앙대 박사과정)

제 목 차 례

제1장 연구배경	1
제2장 연구내용 및 방법	3
1. 연구내용	3
2. 연구방법	4
제3장 국내외 문헌자료 분석	5
1. 국내 문헌자료 분석	5
2. 미국의 부정수급 분석	12
3. 영국의 부정수급 분석	25
4. 캐나다의 부정수급 분석	30
5. 호주의 부정수급 분석	33
6. 스웨덴의 부정수급 분석	39
7. 각국 비교 분석	42
제4장 현황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47
1. 부정수급 처리과정 분석	47
2. 부정수급 관련 부처 간 협업체계 분석	51
3. 복지·보조금 신고처리 실적 분석	56

제5장 기관 간 연계, 정보시스템 공유 및 활용내용 분석	72
1. 기관 간 연계 및 정보공유 시스템 부재에 따른 문제분석	72
2. 유관기관 정보시스템과 연계 가능성 분석 결과	76
3.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93
제6장 중장기 발전방안 제시	101
1. 「신고센터」의 명칭에 대한 제안	101
2.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의 업무처리 단계에서의 발전방안	103
3.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의 조직발전 방안	106
4. 가칭 복지비·보조금 부정신고처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 ...	108
5. 개별 기관과의 정보 연계활용에 관한 발전방안	108
6.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활용에 관한 발전방안	111
7. 중장기 발전방안 로드맵	113
제7장 결론	119
참고문헌	120

표 차례

<표 3-1> 사회복지법인시설 부정수급 유형	7
<표 3-2> 복지부정수급 영역 및 내용	10
<표 3-3>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비율	17
<표 3-4> 실업급여 부정수급 급여수준별 통계	18
<표 3-5> 미국 실업급여 과다수급 통계: 2005~2009	20
<표 3-6> BAM의 부정수급 탐지기법	23
<표 3-7> 호주의 Centrelink 운영사례	35
<표 3-8> 부정수급 신고기관 유형	37
<표 3-9> 외국의 부정수급 관리방법 비교	46
<표 4-1> 부정수급 처리과정	48
<표 4-2>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의 정원 및 현원	50
<표 4-3> 부정수급 신고처리 실적 개요 (2016년 9월 기준)	57
<표 4-4> 신고접수 경로	58
<표 4-5> 신고처리 경과일	58
<표 4-6> 신고처리 유형	59
<표 4-7> 유형별 신고처리 경과시간	59
<표 4-8> 복지비·보조금 영역별 경과일 분석	61
<표 4-9> 보건복지 영역의 사건처리 경과일	62
<표 4-10> 고용노동분야 사건처리 경과일	62
<표 4-11> 유형별 신고처리 건수	63
<표 4-12> 기관 유형별 신고처리 건수	64

<표 4-13> 조사·수사기관 분석	66
<표 4-14> 복지비·보조금 환수 결정액(단위: 1,000)	69
<표 4-15> 보건복지 영역의 분야별 환수금액	70
<표 4-16> 고용노동 영역의 분야별 환수액	71
<표 5-1> 보건복지부의 부정수급 신고유형 및 신고포상	80
<표 5-2> 복지 분야 연계 및 활용 가능 대상 기관	85
<표 5-3> 보조금 분야 연계 및 활용 가능 대상 기관	89
<표 5-4>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RCMS	90
<표 5-5>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NTIS	91
<표 5-6>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SMTECH)	92
<표 6-1> 「신고센터」의 명칭 변경 대안	102
<표 6-2> 부정수급 처리과정에서의 발전방안	106
<표 6-3> 「신고센터」의 중장기 발전방안 로드맵	118

그림 차례

<그림 3-1> 부정수급 적발 시 처리 경로	6
<그림 3-2> 미국 일리노이 주의 부정수급 처리과정	15
<그림 3-3> BAM의 부정수급 탐지과정	22
<그림 3-4> 영국의 부정수급 처리 과정	25
<그림 3-5> 부정수급 처리과정	32
<그림 3-6> 부정수급 통제 및 처리 과정	39
<그림 3-7> 부정수급 혐의 인정과 무혐의 비율	40
<그림 3-8> 스웨덴의 복지 부정수급 통제 방안	41
<그림 3-9> 부정수급의 유형	43
<그림 4-1>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의 조직구성	53
<그림 5-1> 신고센터와의 연계 관계 분석	73
<그림 5-2>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접속 방법	76
<그림 5-3> 보건복지부의 부정수급 처리과정	78
<그림 5-4>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리과정	83
<그림 5-5>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처리과정	84
<그림 5-6> 국토교통부의 보조사업 관리과정	86
<그림 5-7> 통합연계시스템 구조도	94
<그림 5-8> 업무단계별 상시 모니터링 구조	96
<그림 5-9> 부정수급 모니터링 과정	99
<그림 6-1> 개별기관과 연계활용 구조도	110
<그림 6-2>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과 복지비·보조금부정신고 처리시스템의 연계구조도	112

요약문

I. 연구배경

연구배경으로 첫째,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대비하여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의 기능을 범정부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처리 전담기구’로의 기능 제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공공재정의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부정수급 유형도 복잡·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어 부정수급의 효과적 대처가 필요하다. 셋째, 각급 기관이 보유한 부정수급 관련 원천 데이터는 「신고센터」에서 적극적 활용이 불가능하여 부정수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신고센터」는 현재 부정수급 적발 위주의 신고사건 처리로 그 활동의 범주가 제한적이다. 향후 부정수급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II.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연구내용은 첫째, 공공재정 관련 국내 기관별 고유 정보시스템 체계 등 현황 조사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둘째, 기관 간 정보시스템 공유 및 활용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 제시 및 단계별 구체적 대응 방안 제시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공공재정 관련 국내 기관의 보유 또는 구축 중인 정보시스템 현황 및 기능을 파악과 운영 실태 등을 조사한다. 둘째,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들로부터 조언과 의견 수렴 및 반영이다. 셋째, 국내외 문헌자료를 분석하여 복지비·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탐색한다.

III. 국내외 문헌자료 분석

1. 국내

권익위가 복지비나 보조금 부정수급 통제를 위한 전담기구이지만 보건복지부(2016)는 자체적으로 복지 부정수급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었고, 고용노동부는 보건복지부처럼 부정수급 신고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보조금은 전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자체적으로 부정수급 처리를 위한 활발한 활동은 없었다.

2. 해외

복지 부정수급 관리는 정치적 이념과 일반 시민의 복지에 대한 관점에 따라 탐지 범위와 사후처리의 강약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비교대상 국가들의 공통점은 고도의 전문성이었다. 복지급여와 연금급여 등 복지 일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알아야 부정수급을 추적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출발한 전문성이었다.

미국은 부정수급 탐지의 전문성을 실업급여 정확도 계측(BAM) 시스템으로 구현하고 있다. 부정수급 실업급여의 유형을 정리한 후 실업급여 신청자 정보, 실직자의 사용자 보관 정보, 실업급여 담당기관의 기록 정보를 비교하여 급여를 받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부정수급자를 모두 걸러낼 수는 없어도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여 부정수급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수급 예방효과도 동시에 거두고 있다.

영국의 복지 전반에 대한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고용연금부는 부정수급 관리도 복지업무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따라서 복지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와 사후 처리과정에서 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부정수급 전문성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부정수급조사관(FIO)을 활용하여 보훈분야까지 포함하여 복지부정을 탐지하여 바로잡으려고 하지만 생계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보류하는 방식의 사후처리를 실시하고 있다.

복지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까지 적용한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 영국과 유사한 차원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격심사관(ERO)제도를 도입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수준을 높인 사례 등 단순부정으로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급 수준을 줄이고, 과다 지급된 부분에는 환수 결정을 내리고 종결하지만 범죄수준의 부정으로 의심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

호주는 각 부처 장의 책임 하에 부정수급을 내사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에 의뢰하여 수사를 진행한다. 내사 단계에서 FCO가 역할

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수급 조사과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식은 영국의 FIO와 유사하다. 스웨덴은 복지급여 우선이라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복지국가답게 부정수급의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복지급여나 서비스의 전달과정을 치밀하고 명쾌하게 정리하면 부정수급이 줄어든다는 복지주의 원칙에서 부정수급을 처리하고 있다.

IV. 현황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1. 부정수급 처리과정 분석

부정수급의 효율적 신고관리를 위해 2013년 10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설치하였고, 2015년 1월부터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부정수급 신고, 접수, 이첩·송부, 조사·수사, 결과통보 같은 처리과정 중에서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단계는 신고, 접수, 이첩·송부, 결과통보 단계이다. 이 중에서 신고와 접수는 권익위가 중심이 되는 단계로서 전문성이 요구된다.

2. 부정수급 관련 부처간 협업체계 분석

1)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의 조직 분석

「신고센터」의 조직은 권익위 인력 9명, 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인력 8명, 경찰 1명, 그리고 6개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인력 6명으

로 구성된 정부협업 조직이다. 정부는 17개부, 5처, 16청, 2원, 6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력 파견 부처는 제한적이고 편중되어 있다. 보조금 사용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 등 6개 외에도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와 같은 장관급 기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은 차관급 기관이 있지만 이 기관에서의 파견인력은 없다.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를 집중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파견 인력이 필요하다.

2) 관계기관 협의체 활동 분석

권익위의 「신고센터」는 일부 부처의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처리하는 조직이 아니라 전 부처의 부정수급 문제를 처리하는 조직이다. 복지비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이 업무협조를 논의하는 협의체는 「복지재정 효율화」 관계기관 회의,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 회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방지대책 공동협의체」 등이 있었다. 세 협의체 모두 실무를 지원하는 수준은 아니고, 정기회의 개최도 없다. 복지비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실무자 협의체, 보조금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실무자 협의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실무자 협의체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

3. 복지·보조금 신고처리 실적 분석

1) 신고처리 실적과 접수경로 분석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월평균 230~300건으로 이 중에서 24~29%에 해당되는 70여개 부정수급 사례가 매월 접수되었

다. 「신고센터」의 출범 이후에 그 월평균 건수는 약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접수 경로가 다양한 것처럼 보였지만 「신고센터」의 홈페이지가 압도적으로 많은 95.5%였다. 우편접수는 2.3%였다. 국민신문고, 팩스, 방문, 출장 등은 1%도 미치지 못했다. 홈페이지에 지나치게 의존적이었다.

2) 사건처리 경과일 분석

평균 신고처리 경과일은 88일 정도였다. 짧으면 7일, 길면 419일이 걸린 사례도 있었다. 유형별로 분석하면 이첩이 과반 정도에 이르는 48.2%였고, 다음은 종결로 25.0%였다. 송부는 19.2%였고, 조사 중인 케이스는 7.7%였다. 이첩 등 사건 처리 유형별로 걸리는 시간은 각기 달랐다. 이첩에 3개월이 넘는 99.28일이 걸렸다. 종결처리에는 81.27일이 걸렸다. 송부는 75.57일이었다.

복지비·보조금 영역별로 경과일 차이가 나타났다. 해양수산 영역은 평균 111일로 가장 길었고, 재정경제 영역은 가장 짧은 61.5일이었다. 교육 영역의 경우 80일에서 90일 사이였다. 보훈 분야는 복지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이 경과되었다.

보건복지 영역만 경과일 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장 긴 분야는 보육과 취약계층으로 평균 90일이 넘었다. 주거복지, 기초생활지원, 식품위생 분야는 가장 짧았으며 그 기간은 70일에서 78일 수준이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여성가족 분야의 처리 경과일은 대체로 80일에서 90일 사이로 평균 수준이었다. 고용노동 영역을 세분화하여

사건처리 경과일을 분석한 결과 노동 분야가 가장 긴 88일이었고, 산재보험 분야가 가장 짧은 68일이었다.

3) 유형별 신고건수

보건복지부 관련 사업의 부정수급이 557개 케이스로 전체의 약 60%였다. 노동부 관련 사례는 130개로 전체의 13.8%였다. 세 번째는 산자부 관련 부정수급으로 89개 케이스에 9.5%였다. 국토교통, 교육, 국방, 농림, 문광, 부훈, 여가, 재정경제, 해양수산 등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공공기관별 통계는 파악할 수 없었으나 조사기관을 기초로 유추하면 건보, 국민연금, 근로복지 등의 기관이 부정수급 신고 건수가 많은 기관으로 나타났다.

4) 조사기관 분석

928개의 접수된 사례 중에서 조사기관이 확정된 622개의 케이스만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 36.2%에 해당되는 225개만 단일기관이 조사를 담당하고 있었고, 나머지 기관은 복수 조사기관이었다. 단일기관으로는 중앙부처 34개 케이스, 공공기관 24개 케이스, 경찰청 22개 케이스 순이었다.

단일 조사기관으로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138개 케이스로서 가장 많았다. 지방자치단체가 복수로 관여하는 사례를 모두 합치면 379개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이처럼 부정수급에 많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은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55.3%에 이르는 344개 사건이 경찰의 조사 및 수사가 개입된 케이스였다.

5) 부정수급 규모 분석

2016년 「신고센터」에서 부정수급으로 적발한 금액은 261.4억이었다. 2016년도를 기준으로 복지예산, 국고보조금, 그리고 R&D 예산을 합한 금액은 202.1조였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122.9조였고, R&D 예산은 18.9조 그리고 국고보조금 60.3조 중복복지부분과 중첩되는 29.7조를 제외하면 30.6조였다. 예산 대비 적발액의 비중은 0.015%로서 높은 비중은 아니지만 국가예산 절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간과할 수 없는 수치라고 말할 수 있다.

6) 환수 결정액 분석

「신고센터」 설치 후 최근까지 총 환수금액은 589억4,100만원이었다. 보건복지 영역이 가장 많아 총 557건 중 170건에서 433억3,100만원 수준이었다. 두 번째는 노동 영역이었다. 총 130건 중 51건이 환수 대상이었으며, 총액은 107억3,400만원 수준이었다. 세 번째는 농림 영역이었는데 총액은 21억1,000만원이었다.

보건복지 영역 중에서 건강보험 분야의 환수 총액이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 부정수급 117건 중 26건의 환수 결정이 있었고, 환수 총액은 397억3,500만원이었다. 고용노동 영역에서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전체 69건 중 29건으로부터 환수가 있었다. 환수 총액은 78억500만원이었다. 평균의 관점에서 환수추정액과 환수결정액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다. 부정수급 전체 사례를 대상으로 할 경우 추정액은 평균 3억400만원이었는데 조사 후 확정환수 결정액은 이를 상회하는

4억1,700만원이었다. 1억1,200만원의 차이가 있었다.

V. 기관 간 연계, 정보시스템 공유 및 활용내용 분석

1. 기관 간 연계 및 정보공유 시스템 부재에 따른 문제분석

「신고센터」는 현재 타 기관 간 부정수급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이 미비되어 있다. 부정수급 신고 처리의 중심 조직이지만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부처 홈페이지에는 부정수급 발생 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배너조차도 없었다. 기획재정부 등 17개 부, 국민안전처 등 5개 처, 그리고 16개 청 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위원회, 감사원과 국가정보원 등의 중앙행정기관이 있지만 부정수급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신고센터」에 연계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 기관은 없어 「신고센터」의 허브 기능이 취약했다.

2. 유관기관 정보시스템과 연계 가능성 분석 결과

1)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의 접근 가능성 분석

「신고센터」는 권익위의 소속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의 홈페이지를 열어도 「신고센터」가 바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권익위 홈페이지에서 청렴신문고로 들어가야 「신고센터」에 접속이 가능하다. 「신고센터」에 대해 잘 알아야 찾을 수 있다. 청렴신문고를 알면 바로 청렴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신고센터」에 접속할 수 있지만 이

사이트 역시 일반인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더군다나 청렴신문고 아래에 「신고센터」가 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복지 분야

복지 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사업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정보, 어린이집보육료 지원 수급자 정보, 장애인복지 수급자 정보 등을 중심으로 “복지로의 부정수급신고 사이트<<https://www.bokjiro.go.kr>>”를 통하여 부정수급 신고처리를 실시하고 있다.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 사이트”에서는 신고방법으로 온라인, 우편, 방문, 전화 상담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부정수급 신고는 권익위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함으로써 「신고센터」가 부정수급 처리의 “허브 조직”이라는 점도 밝히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신고처리를 자체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었다. 고용노동부의 보조금이나 복지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과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두 영역으로 나누어 부정수급을 처리한다.

3) 보조금 분야

보조금의 부정수급도 심각한 예산 누수의 한 유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토부는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을 두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관리체계는 부정수급에 집중되어 있다기보다는 보조금 사업을 관리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 집중관리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부정수급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처럼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중기청에서 활용하는 부정수급 처리 활동은 현장점검, 적발 시 제재조치, 그리고 부정수급 경각심 고취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은 연구 수행기관과 전담기관의 연구비관리, 연구비복원, 연구비정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연구비 전담기관에서는 계좌조회, 입출관리, 입출금등록, 요청내역관리, 계좌관리, 계정관리 등이 가능하다.

「신고센터」가 전자적으로 이 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하면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비 부정수급 관련 정보를 얻고, 부정수급 사전 예방, 사후 처리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1) 시스템의 개념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일명 e-나라도움)은 2017년 1월 1일 조기 개통, 7월 1일에 완전개통 예정이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 구현을 위하여 55개 중앙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 총 560여개 기관 정보를 연계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2) 중복·부정수급 방지기능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은 개인이나 법인이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수급자격에 대한 검증 정보를 연계하여 비자격자가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을 차단한다. 급여형 보조사업의 경우 복지부의 행복e음, 농림부의 Agrix 등 자체검증시스템을 통하여 자격검증을 실시한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는 자격검증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이 가능하다.

중복수급검증은 동일사업 내의 자격검증과 달리 전 부처의 모든 보조사업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검토하는 하위시스템이다. 중복수급 관련 자료는 수급자 이력 및 상세 사업정보를 조회하고 다른 보조사업 신청이 있는지 조회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조사업 수행 후, 2개 이상 사업을 수행하거나 보조금을 받은 수급자를 통합DB에서 추출하여 중복수급 여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

「신고센터」는 중복수급 검증 시스템에 연계하면 선제적·예방적 차원의 중복수급여부를 적발할 수 있다. 부정수급 모니터링은 보조금 사업자, 보조금 수급자, 거래처에 대하여 부정수급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종합분석을 실시하고 위험도가 높은 사업의 경우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하위시스템이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은 모니터링을 통하여 부정수급을 감지하기 위해 과거 보조사업 부정사례, 현재 보조금 집행상황, 그리고 향후 보조사업 수행가능성 등에 대하여 과학적 분석을 실시하도록 설계

되어 있다. 연관분석, 행동분석, 신용분석, 그리고 경험분석을 기초로 점수화 하는 접근법이다.

점검관리/정보공개는 부정수급으로 확정된 수급자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정보공개 및 부정수급 의심사례 신고채널을 개설하여 대국민 감시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 하위시스템을 통하여 부정수급 신고 및 조사 중인 의심사례 정보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보조사업 담당자는 선정단계부터 참고가 가능하다.

「신고센터」는 점검관리/정보공개에 연계함으로써 부정수급 의심사례에 대한 자동신고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의심사례의 사안이 상당히 구체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신고형태로 전달되어 센터 조사관의 확인, 조사 과정을 거쳐 정식 이첩 사건으로 처리하는 등 「신고센터」의 조사기능 수행에 적극적 활용이 가능하다.

VI. 중장기 발전방안 제시

1. 「신고센터」의 명칭에 대한 제안

현행 「신고센터」는 전 부처의 복지비와 보조금의 부정수급의 신고를 받고 처리하는 허브조직 대명사로서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보조금·복지부정 신고처리단”과 “공공재정 부정 신고처리단” 중에서는 후자가 간결하고 「신고센터」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명칭이라고 판단된다. “공공재정”용어에서 기재부 이미지가 강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으나, 현재 권익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의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과 관련하여 볼 때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신고센터」의 명칭 변경 대안

대안	장점	단점
제1안: 보조금·복지부정 신고처리단	명칭이 간략하고, 보조금과 복지비 모두를 포함하는 명칭, “~단”에서 조직 격상 이미지 확보	조직 확대에 대해 행정 자부의 업무협조 필요
제2안: 공공재정 부정신고처리 단	명칭이 간략하여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 가능; “~단”에서 조직 격상 이미지 확보	조직 확대에 대해 행정 자부의 업무협조 필요; “공공재정”용어에서 기재부 이미지 포함

2.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의 업무처리 단계에서의 발전방안

「신고센터」의 부정수급 처리과정 분석 결과 신고단계, 접수단계 및 이첩송부 단계, 그리고 수사조사 단계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신고단계에서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상태인 경우에 제보자로부터 신고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같은 소극적·수동적 접근을 뛰어넘어 「신고센터」 알리기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 부정수급 신고는 대부분이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신고소스의 다양성이 전제가 되어야 다양한 분야에서 다

양한 유형의 부정수급 사례가 제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부정수급 신고의 접수단계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접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과정상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데 접수 결정에 대한 공식적 절차가 부재한 상태여서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신고센터」는 정부협업조직이지만 정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력만이 권익위 인력이기 때문에 부정수급 처리과정 상 안정적 관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셋째, 조사·수사단계에서 조사·수사를 행하는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는 유지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명시적 역할 관계에 대한 내용은 보이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조사 및 수사의 중간 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과 활용이 필요하다. 해당기관에서는 환수 등 후속조치를 하는데 이를 모니터링 하는 공식 시스템 개발도 필요하다.

3.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의 조직발전 방안

1) 「신고센터」의 조직에 관한 발전방안

「신고센터」는 권익위 인력 9명, 8개 중앙행정기관의 파견 인력 8명, 경찰 1명, 그리고 6개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인력 6명으로 구성된 정부협업 조직이다. 인력 파견 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건보심평원 등 3개 기관으로 가장 많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LH는 국토교통부, 장학재단은 교육부 산하 공

공기관이다. 교육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는 부처에서도 인력을 「신고센터」에 파견하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이중 삼중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재 600개가 넘는 공공기관이 있는데 어느 정도 대표성도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관계기관 협의체 활동 분석

협의체 방식으로 업무협조를 논의하는 회의는 「복지재정 효율화」 관계기관 회의,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 회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방지대책 공동협의체」 회의 등 세 개가 있지만 세 협의체 모두 상설협의체와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실무협의체 수준이 아니다. 실무적 차원에서 부정수급 신고를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치는 없다. 따라서 부처 중에서 복지예산의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실무자 수준의 협의체, 보조금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실무자 수준의 협의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부정수급을 신고하고 관리하는 실무자 수준의 협의체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

4. 가칭 복지비·보조금 부정신고처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

「신고센터」는 현재 복지비와 보조금의 부정수급 신고 처리를 하는 허브 조직이지만 이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포털 시스템이 부재 상태이다. 복지비와 보조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준정부기관과 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 등 광범위하다. 다양한 부정수급 신고 처리를 위한 포털시

시스템 기능이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타 시스템과의 적극적 연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개별 기관과의 정보 연계활용에 관한 발전방안

1) “부정신고처리시스템” 구축 이전

가칭 “부정신고처리시스템”의 구축 이전부터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는 「신고센터」의 부정수급 안내 배너 등 협조가 필요하다. 협조 공문 처리를 하면 「신고센터」의 전화번호나 웹사이트 정도는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처 간 칸막이 제거라는 정부 3.0 논리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각급 기관이 웹사이트에서 안내하는 「신고센터」를 클릭하면 바로 「신고센터」의 웹사이트가 열리는 간단한 연계장치도 필요하다. 이 수준의 초보적 연계는 부정신고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미 있는 활용기반이 될 수 있다.

2) “부정신고처리시스템” 구축 이후

가칭 “복지비·보조금 부정신고처리시스템”이 구축되어 활용 가능한 단계에 이르면 개별기관과 적극 연계활용도 가능하다. 예컨대,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수급자 정보, 어린이집 보육료지원 수급자 정보, 장애인복지 수급자 정보, 행복e음 수급자 정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자격자 정보 등 복지비 부정수급 관련 사항을 연계할 수 있다.

3) 부정신고처리시스템 발전 방안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은 복지비의 부정수급 관리한다는 관점에서 기능에 제한적이다. 따라서 “부정신고처리시스템”은 장기적으로 복지비와 보조금의 부정수급 신고처리를 위한 포털 시스템으로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활용에 관한 발전방안

1) 연계 내용 및 방법

복지비·보조금 부정신고관리시스템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시스템 구축이 다음 단계로 필요하다. 연계시스템은 자격검증, 중복수급 검증, 부정수급 모니터링, 점검관리, 부정수급자 정보공유/공개 등 5단계에서 가능하다. 이러한 5단계상 한꺼번에 연계활용이 가능지만 두 시스템 및 시스템 사용자 간의 원활한 소통이 전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정수급자 정보공유/공개를 우선적으로 연계활용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연계는 단기 수준에서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수준의 연계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자격검증, 중복수급검증, 점검관리, 모니터링, 부정수급자 정보공유의 전 과정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 연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26조의3에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등의 선정 및 자격확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이 통과되면 연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권익위가 정보를 제공받는 입장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견청취 등)에서 위원회는 부패방지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 등의 제출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에서의 한계

「신고센터」가 신고 처리하는 업무는 복지비와 보조금을 포함하고 있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는 보조금이고 복지비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연계하더라도 복지비에 대한 연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지비 외 보조금 부정수급 처리시스템의 구축 및 포털 기능 수행이 필요하다.

7. 중장기 발전방안 로드맵

발전방안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부정수급 신고처리 과정이나 홍보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부분의 발전 방안은 앞에서의 내용으로

대체하고 조직/인사, 가칭 복지비·보조금신고처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 그리고 타 부처와의 연계시스템 구축 및 활용으로 크게 나누어 중장기 발전방안 로드맵을 제시한다.

1) 조직/인사 분야의 로드맵

조직/인사 발전을 위한 단기과제로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분야의 전문가 확보가 필요하다. 조직/인사의 단기과제로서 중앙부처의 실무자 중심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다만, 이 과제는 정부조직 체계상 총리실, 또는 기재부로부터 권익위의 부정수급 신고처리에 대한 적극적 협조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전문성 확보와 안정적 인력관리를 위해 「신고센터」의 고유인력이 필요하다. 영국의 부정수급조사관(FIO), 캐나다의 자격심사관(ERO) 등은 「신고센터」의 고유 인력 확보를 위해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2) 복지비·보조금 부정수급신고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로드맵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은 보조금 관련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선제적 예방적 기능이 포함된 시스템이지만 복지비는 예외이다. 복지비 부정수급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으로 잡아내지 못한 34% 보조금 부정수급의 신고처리를 할 수 있는 복지비·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처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ISP와 BPR을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시스템을 구축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연계시스템 구축·활용을 위한 로드맵

연계시스템은 아날로그 방식의 연계와 디지털 방식의 연계가 모두 필요하다. 조직/인사 분야에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일종의 연계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신고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단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계 방안은 복지비 및 보조금 관련 각급 기관의 홈페이지에 「신고센터」의 전화번호를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를 얻어내는 과제이다. 각급 기관의 홈페이지에 「신고센터」의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배너 혹은 칸을 협조 받을 수 있다면 동시에 또는 다음 단계로서 그 배너나 칸을 클릭하면 「신고센터」의 홈페이지가 열리도록 하는 간단한 방식의 연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단기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 자료 활용 수준에서 시작하여 모니터링 시스템과 같은 단계를 부분 연계한 후에 최종적으로는 보조금 분야에서의 부정수급 정보를 완전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표1> 「신고센터」의 중장기 발전방안 로드맵

분야	단기			중장기		장기
	명칭 변경	파견 전문 인력 확보	실무 협의체 구성 활용	안정적 인력관리 위한 고유인력 확보	통합신고센터로 조직 재구성	
조직 / 인사						통합신고센터로 조직발전, 부정수급
시스템 구축	부정수급신고처리 시스템 ISP와 BPR		부정수급신고처리 시스템 구축	부정수급신고처리시스템 활용		신고처리 시스템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연계 시스템	각급 기관 홈페이지에 신고센터 전화안내	각급 기관 홈페이지에 원클릭 오픈 시스템 적용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과 부분연계: 자료 활용 수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과 완전연계		금통합관리시스템 완전연계

VII. 결론

공공재정 부정수급은 다양한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통합관리 차원의 접근법이 필요하다. 신고센터의 인적구성도 이 관점에서 재설계되어야 하고, 신고 접수 후 조사업무도 통합관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단순히 자료관리 차원의 관리방식에서 탈피해야만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한계는 보조금에만 집중되어 있고 복지비는 비껴나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을 「신고센터」에서 감당해야 한다. 따라서 가칭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고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활용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중간에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의 기관과 개별적인 연계활용 방안
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1장 연구배경

본 연구의 추진배경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에 대비하여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의 기능을 범정부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처리 전담기구’로의 기능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신고센터에서는 복지·보조금만이 아니라 공공재정 전체의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있고, 「청탁금지법」의 출범으로 관리범위의 확대가 예상되므로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조사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둘째, 공공재정의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부정수급 유형 또한 다양하고 복잡하게 진화하고 있어 과거 또는 현행 조사방식으로는 부정수급 현상의 효과적 대처에 한계가 있다. 예컨대, 신고내용에 따라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문서 형태로 요구해야 하기 때문에 기초 자료 수집에만 1주일 이상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신고사실 노출 및 증거 인멸 우려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부정수급이 신고된 사건 위주로만 처리됨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미노출 영역에서의 부정수급은 확인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현행 부정수급 신고처리 방식의 개선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셋째, 각급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정수급 관련 원천 데이터는 동 신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하다. 신고를 기초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관련 정보 공유 절차 및 취급권한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되어 있다. 부정수급 데이터를 각급 기관과 연계하여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 과학적 조사 형태의 구현이 필요하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 개통되면 이 시스템의 활용으로 부정수급 정보에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동신고센터는 현재 부정수급 적발 위주의 신고사건 처리로 그 활동의 범주가 제한적이다. 향후 부정수급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종합적·총괄적 부정수급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등에 대한 통합 DB를 구축하여 부정수급 위험(Risk) 사례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현(Simulation)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장기적 발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제2장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연구내용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공공재정 관련 국내 기관별 고유 정보시스템 체계 등 현황 조사를 하고 그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파악한다. 1) 각급 기관에서 보유 또는 구축중인 정보시스템 현황 및 기능을 파악하여 연구에 활용한다. 2) 공공재정 전담 기관 간 정보 활용권한 및 취급 범위 등에 대해 파악하여 연구에 활용한다. 3) 부정수급 조사과정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개별 조사사례를 파악하여 연구에 활용한다.

둘째, 기관 간 정보시스템 공유 및 활용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 제시 및 단계별 구체적 대응 방안 등을 제시한다. 기획재정부에서 2017년 1월 부분 개통, 7월 완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신고센터」의 역할에 관한 연구도 병행한다.

끝으로 기타 필요한 경우 외국의 부정수급 조사단계에서의 정보시스템 활용실태 문헌 연구 등을 기초로 효율적인 신고체계 방안 등 신고센터 기능 강화 및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발전방안에는 선제적·예방적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방안이나 복지 및 보조금 분야 신고접수 처리 기능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명칭 변경 검토 등의 방안도 제시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자료 연구조사 및 관련분야 의견수렴과 같은 두 가지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관련 자료 연구조사는 공공재정 관련 국내 기관의 보유 또는 구축중인 정보시스템 현황 및 기능을 파악하고 그 운영 실태 등을 조사한다. 또한 부정수급 조사과정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개별 조사사례를 연구한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기관 간 정보시스템 공유 및 활용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 제시 및 단계별 구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조사 과정에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한 효율적인 신고체계 방안 등 「신고센터」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다. 이 시스템의 구조와 보조금 관리과정을 분석하고 「신고센터」에서 연계가능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관련분야 의견수렴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구자 이외의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들로부터 조언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고자 한다. 의견수렴은 권익위원회 관계자와 사전협의 후 진행한다. 기타 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한 경우 기타 과업추진 관련 회의참석 및 개최를 실시한다.

셋째, 국내외 문헌자료를 분석하여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탐색한다. 특히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 어느 기관이 어떤 방법으로 복지 부정수급을 추적하여 어떤 수준의 행정처벌이 내려지는지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제3장 국내외 문헌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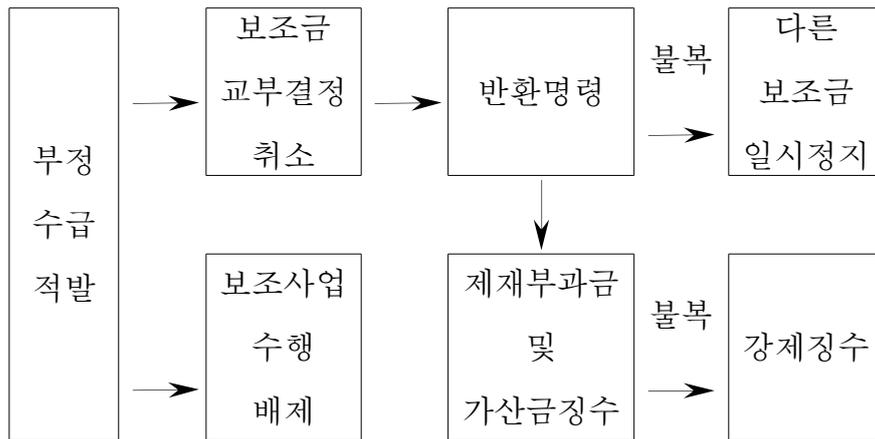
1. 국내 문헌자료 분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복지급여를 포함한 보조금 부정수급은 용도 외에 사용하였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하였거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행위를 의미한다. 동법 제31에서 제33조까지 부정수급을 한 경우 처리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 의하면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불복하면 다른 보조금까지 일시 정지할 수 있다. 부정수급 보조금의 반환뿐만 아니라 사용한 금액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반환명령에 더하여 제재부과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데 여기에 불복하면 강제징수를 실시할 수도 있다.

제재부과금이나 가산금 징수의 예외 규정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급여 등이다. 이 예외 규정은 빈곤층, 장애인, 노인 그리고 한부모 가장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급여이거나 제재부과금 징수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그림 3-1> 부정수급 적발 시 처리 경로



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가 복지급여나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통제를 위한 전담기구이지만 보건복지부(2016)는 자체적으로 복지부정수급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급여가 차지하는 부정수급의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정수급의 비중이 적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고용보험을 관리하는 고용노동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같은 부정수급 신고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부정수급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혜택이나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등의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수급자격을 속이거나 입소자를 늘리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라고 정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표3-1>에서와 같이 사회복지법인·시설 부정수급 사례집을 발간하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수급 문제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

사회복지법인·시설 관련 5개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부정수

급은 종사자를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를 부당집행 하거나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수혜자를 허위 등록하여 집행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밖에도 운영관리를 부적정하게 하거나, 후원금 관리를 부적정하게 함으로써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표 3-1> 사회복지법인시설 부정수급 유형

시설유형	부정수급 유형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시설 회계 미분리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사회복지법인 운영 관리 부적정 법인시설의 후원금 집행 부적정
어린이집	아동 허위등록, 보조금 부당 청구 시간 연장 보육료 과잉 청구 종사자 허위 등록 후생경비 부당 집행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부당 집행 보조금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부당 집행 입소 장애인 관련 예산집행 부적정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집행 부적정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 부당집행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건비 등 집행 부적정 노인복지시설 보조금 집행 부적정 노인복지시설 시설비 집행 부적정

보건복지부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부정수급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사이트는 “복지로의 부정수급 신고 사이트<<https://www.bokjiro.go.kr/wrsd/uide1.do>>”인데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위치를 9개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이 부정수급을 하는 유형도 포함하고 있다.

“복지로”에서 제시하는 부정수급은 아래의 <표3-2>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에게 제공되는 복지급여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자격을 얻기 위해 본인과 가족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이 된다.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의료보장의 중심 역할을 하는데 의료기관이 환자가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 진료횟수를 부풀리는 등의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부정수급이 된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케어복지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데 실제 제공한 서비스 일수 보다 늘려서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부정수급이 된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장 장치로서 실종 또는 사망자의 명의로 국민연금 급여를 계속 지급 받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된다.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인데 어린이집 아동 또는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보육료 또는 인건비를 지급 받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된다.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에서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받는 경우 부정수급이 된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영역에서는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가

담합하여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가 있으면 부정수급이다. 장애인복지에서 허위 진단서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된다. 그리고 공무원이 장애수당 등 보조금 신청을 허위로 작성한 후 차명계좌로 횡령하는 경우도 부정수급이다. 복지로는 이 모든 유형의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표 3-2> 복지부정수급 영역 및 내용

부정수급 영역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자격을 얻기 위해 본인과 가족 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허위로 부양의무자와 가족 관계를 단절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국적상실, 이민출국, 주민등록 말소 등의 비적격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 -의료기관이 환자가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 진료횟수를 부풀리는 등의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	-실제 제공한 서비스 일수 보다 늘려서 장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국민연금	-실종 또는 사망자의 명의로 국민연금 급여를 계속 지급 받는 경우
어린이집	-어린이집 아동 또는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보육료 또는 인건비를 지급 받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받는 경우
사회서비스 바우처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가 담합하여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장애인복지	-허위 진단서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공무원 횡령	-공무원이 장애수당 등 보조금 신청을 허위로 작성한 후 차명계좌로 횡령하는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국내 문헌은 많지 않았다. 부정수급보다는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에 관한 논문이 발견되었는데 김효근·서희열(2014) 연구는 정부 보조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사업비정산시스템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보조금 증빙과 관련된 세법제도 및 회계기준 분석 그리고 정부 보조금 사업의 증빙 절차에 대한 현황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제시한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은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었다.

첫째, 현재 일부 정부 보조금 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사업비정산시스템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다. 사업비정산시스템 도입 단계에서 보조금을 카드로 사용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둘째, 보조금 사업자의 증빙서류 작성 능력이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보조금 사업 참여자에 대한 의무 결산 교육, e-Learning 교육 프로그램 제공, 결산 지원 담당부서의 신설 등이 제시되었다. 셋째, 보조금 사용 내역 입력기한이나 사전 정산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넷째,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정산 시스템에 저장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사업자의 증빙서류 보존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제시하고 있다.

윤태섭·이삼주·김성주(2016)는 지방보조금 평가체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관리체계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부정수급 문제를 언급한 정도였다. 이 연구에서 저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에 지원하거나, 광역자치단체가 정책상 또는 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기초자치단체

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로 정의한 후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보조금의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수급대상은 민간기관 및 하위 지방자치단체이다. 민간기관과 하위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방보조금의 유형별 구분기준을 분명히 제시해야 하고, 둘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투명하게 해야 하며, 셋째, 보조금액의 다소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차등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2. 미국의 부정수급 분석

미국은 정부계약이나 재정보조 부정에 대해서는 연방부정청구금지법(False Claims Act, 1986)에 따라 처리하고, 복지비에 관해서는 복지남용의 관점에서 다룬다. 복지비 부정수급에 대한 관심은 존슨(L. Johnson)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 건설을 위한 복지확대가 시행되던 196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리더스 다이제스트, *Readers Digest*나 록 *Look*과 같은 월간지에서 복지 부정수급에 관한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자격 없는 복지 수혜자, 즉 복지남용(welfare abuse)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했다(Kohler-Hausmann, 2007).

잡지 제트 매거진, *Jet Magazine*은 복지남용자를 복지여왕(Welfare Queen)이라는 경멸적인 어조의 별칭을 사용하기 시작해(Hays, 2004) 지금까지 복지부정수급을 일삼는 사람의 대명사 역할

을 하고 있다. 미국의 공공부조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큰 급여 유형이 ‘부양자녀 가정에 대한 급여(AFDC, Aids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였고, 이 급여는 모자가정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었으며, 수급자는 대체로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정부의 사회보장청(SS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은 한국의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 연금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사회보장청의 감사실(OIG, Office of Inspector General)에서 사회보장 연금과 관련된 부정수급 문제를 조사한다. 사회보장 연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사회보장청 감사실은 특별한 절차를 수립하여 집행하지는 않는다. 통상적인 감사활동의 일부로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Reich, 1963).

미국의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규모는 매우 큰 편이다. 2008-2009 회계연도 동안 12만9,495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8,065건을 종결처리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중에서 1,486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했다. 환수, 벌금 등으로 2억8650만 달러를 절약하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ffice of Inspector General, 2010).

미국에서 사회보장 급여 외 복지급여 부정수급은 주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주정부의 복지관련 부서와 실업급여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담당하여 부정수급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 부정수급의 유형은 공공부조 부정수급과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나눌 수 있다. 주정부는 이 두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각기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부정수급에 관한 그 접근법은 유사하다.

1) 공공부조 부정수급

미국의 복지 부정수급 문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편모 가정을 중심으로 공공부조를 실시하던 ‘부양자녀 가정에 대한 급여(AFDC)’ 제도에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미국의 복지의 근간을 흔든다는 강력한 비판을 받아(Murray, 1984) 1996년 ‘빈곤가정 일시지원계획’(Temporary Assistance to the Need Families)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관심이 약화되었다(DeParle, 2012).

복지 부정수급에 대한 통제 및 사후 처리는 주정부 복지급여 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 일리노이(Illinois)주의 사례를 보면 1967년에서 1973년 사이에 복지수급자가 급속히 증가했다. 그러나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사처분 사례는 거의 없었다. 부정수급은 생계형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범죄의도(criminal intent)를 증명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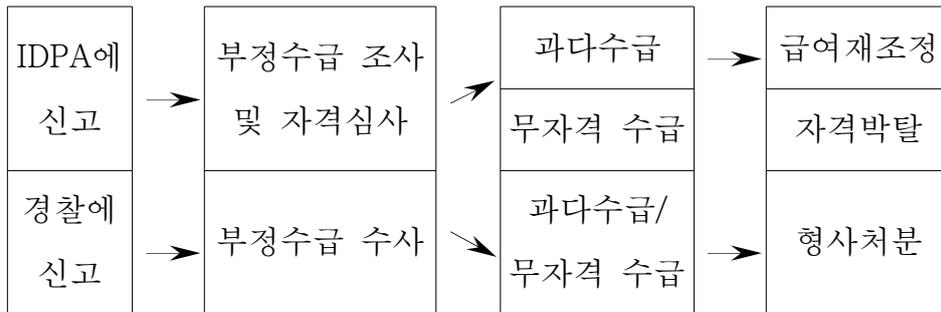
일리노이의 경우 과다수급이 발생되면 <그림3-2>에서처럼 복지 담당부서인 공공부조국(IDPA, Illinois Department of Public Aid)에서는 과다수급인 경우 복지급여를 재조정하거나, 무자격 수급인 경우 자격을 박탈하는 수준에 그쳤다. IDPA에서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주의회의 특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는데 일리노이주 의회의 공공부조 자문위원회(LAC, Legislative Advisory Committee to Public Aid)였다(Kohler-Hausmann, 2007).

부정수급 신고는 주로 이웃이나 아는 사람(acquaintance)에 의해 일어난다. 부정수급 사실을 공공부조국이 아니라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부정수급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범죄행위가 포착되면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특별히 범죄행위로 분류하기보다는, 준범죄(semi-criminal category) 유형으로 분류하여 대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범죄행위로 분류되어 형사처분을 받은 예외적 사례가 1977년에 발생하기도 했다. 모두 부정수급의 수준이 엄중할 뿐 아니라, 범죄 의도가 분명한 경우였는데 시카고에 거주하는 테일러(L. Taylor)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 14개의 가명을 사용하여 의료보조, 현금보조, 푸드스탬프(food stamp)를 통해 15만 달러를 부정수급 한 사례가 발생하여 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Kohler-Hausmann, 2007). 존슨(E. Johnson)이라는 여성은 가상으로 부양해야 할 자녀가 60명이라고 허위 신고하여 24만 달러를 부정수급 한 사례가 적발되어 4년 형을 받기도 했다(AP, 1979).

<그림 3-2> 미국 일리노이 주의 부정수급 처리과정



일리노이 주 의회의 공공부조 자문위원회
Legislative Advisory Committee to Public Aid (LAC)

2) 실업급여 부정수급

a.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미국 복지 부정수급의 또 다른 유형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다. 소득수준의 고하를 막론하고 다양한 계층에서 저지르고 있는 부정수급 유형이다. 저소득층은 생계유지를 위한 필요에 의해서, 고소득층은 탐욕 때문에 쉽게 범할 수 있는 부정이 실업급여 부정이다(Hessing, et al., 1993).

<표 3-3>에서와 같이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Fuller, Ravikumar, and Zhang, 2013) 주간 300~500달러 사이의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37% 수준이었다. 주간 300달러 이하를 받는 수급자의 경우 14%, 300~600달러까지는 37%, 600~900달러까지는 25%가 부정수급이 연루되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매우 광범위하게 부정수급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200달러 이상의 경우는 많이 받을수록 부정수급자 비율도 낮아져 10% 이하였다. 주간 2,400달러 이상을 받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2%정도에 그쳤다.

부정수급의 금액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600~900달러 사이를 부정수급하는 수급자의 비율이 가장 높아 무려 50% 수준에 이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300달러 이하를 부정수급하는 수급자의 비율은 20%였고, 300~600달러 사이를 부정수급 하는 비율은 47%로 가장 많았으며, 600~900달러를 사이를 부정수급하는 비율은 19%였다. 2,400달러를 부정수급하는 비율은 1%에 불과했다.

<표 3-3>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비율

	\$300 & below	\$300-\$600	\$600-\$900	\$900-\$1,200	\$1,200-\$1,600	\$1,600-\$2,400	\$2,400 & above	Total
Individuals collecting unemployment benefit	14%	37%	25%	11%	7%	4%	2%	100%
Individuals committing concealed earnings fraud	20%	47%	19%	6%	4%	3%	1%	100%

자료: Fuller, Ravikumar, and Zhang(2013)

급여수준별로 분석(Fuller, Ravikumar, and Zhang, 2013)한 <표 3-4>에서와 같이 실업급여를 주간 300달러 이하로 받는 수급자는 5.5%로 2,400달러를 받는 최고 수급자의 비율 3%보다 높았다. 300~600달러 사이를 받는 수급자 비율은 29%, 600~900달러 사이를 받는 수급자의 비율은 가장 높은 30%였다. 점점 낮아져, 900~1,200달러를 받는 수급자 비율은 16%, 1,200~1,600달러를 받는 수급자는 10%, 1,600~2,400달러를 받는 수급자는 6.5%였다.

실업급여 수급액이 300달러 이하인 수급자의 과다수급 비율은 10%, 300~600달러가 수급액인 수급자의 과다수급 비율은 43%, 수급액이 600~900달러 사이인 경우 과다수급액은 26%였다. 그 후 점차 낮아져 앞에서 제시한 구간별로 10%, 6%, 5%, 그리고 1%였다. 가장 높은 구간은 수급액이 300~600달러 수준이었다.

<표 3-4> 실업급여 부정수급 급여수준별 통계

	\$300 & below	\$300-\$600	\$600-\$900	\$900-\$1,200	\$1,200-\$1,600	\$1,600-\$2,400	\$2,400 & above	Total
Unemployment benefit	5.5%	29%	30%	16%	10%	6.5%	3%	100%
Overpayments due to concealed earnings fraud	10%	43%	26%	10%	6%	5%	1%	100%

자료: Fuller, Ravikumar, and Zhang(2013)

미국의 복지급여 부정수급의 한 유형으로서 실업급여 과다수급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다. 과다수급 유형으로 분류한 항목은 기타 항목을 포함하여 7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또한 고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적발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느껴질 정도이다. 실업급여의 집행 방법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정리가 필수 사항이기 때문이다(Fuller, Ravikumar, and Zhang, 2013)

첫 번째 과다수급 항목은 소득 감추기(concealed earnings)를 통한 과다수급이다(Kornfeld and Bloom, 1999). 과다수급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래의 <표 3-5>에서와 같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이 항목을 통한 과다수급은 60% 내외이다. 2006년에는 가장 낮은 54.4%였지만 2008년에는 67.3% 수준이었다.

두 번째로 높은 과다수급 항목은 자발적 사직(quits)임에도 불구하고

고 실업급여를 청구하여 받는 유형이었다. 사직을 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직장을 떠났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청구하여 받는 행위는 부정수급에 해당된다(Nicholson and Needels, 2006). 미국 실업급여 관계당국에서는 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에는 이 유형의 부정수급이 12.8%, 2006년에는 16.4% 정도로 빈번했으나 2009년에는 5.14%로 낮아졌다.

세 번째 항목은 파면(fired)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청구하여 수령하는 부정행위이다. 직장에서의 파면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직장을 떠났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의 자격을 상실한다(Nicholson and Needels, 2006). 사직과는 반대로 2005년에는 이 부정수급 비중이 4.3% 수준에 불과했으나 2007년에는 13.7%로 늘어났다. 2009년 현재 9.6% 정도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네 번째는 현실적으로 취업하기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가능한 것처럼 위장한 상태(unavailable for work)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항목이다. 그 예로 하루에 몇 시간 혹은 일주일에 며칠만 일할 수 있는 상태인 경우나 일을 원하지만 교통수단이 전혀 없는 경우 등이 있다. 실업급여의 목적은 재취업이 가능한 개인에게 제공하는 급여로서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재취업이 원천적으로 어렵거나 불가능한 개인은 여기에서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유형의 부정수급은 4%~7% 수준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중에는 불충분한 구직활동(insufficient job search)도 포함된다. 실업급여의 제공 목적은 활발한 구직활동

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재취업을 하도록 하는데 있지 실직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조건 없이 급여를 제공하는데 있지 않다. 활발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실업급여가 제공되는 비중은 3%~5% 수준이다. 그러나 이 유형의 부정수급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채용하고자 하는 곳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거절(refused suitable offer)하는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상실된다. 비록 1%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 유형의 부정수급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중요한 항목 중 하나였다(Wall, 1991). 아래의 <표 3-5>에서 볼 수 있듯이 기타 유형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비중은 10% 내외였다.

<표 3-5> 미국 실업급여 과다수급 통계: 2005~2009

Cause	Percent of Total Fraud Overpayments				
	2005	2006	2007	2008	2009
Concealed Earnings	62.64	54.40	60.06	67.32	65.89
Quits	12.78	16.41	7.06	5.04	5.14
Fired	4.27	4.60	13.29	12.69	9.61
Unavailable for Work	4.94	6.95	4.17	4.60	7.38
Insufficient Job Search	4.55	4.15	4.95	3.02	2.75
Refused Suitable Offer	0.63	0.36	0.80	0.36	0.77
Other	10.20	13.14	9.67	6.97	8.46
Total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Benefit Accuracy Measurement program, U.S. Dept. of Labor
Fuller, Ravikumar, and Zhang, Y. (2015)

b. 실업급여 정확도 계측 프로그램

(BAM, Benefit Accuracy Measurement Program)

실업급여 정확도 계측(BAM) 프로그램은 실업급여 수급자 선정에서 실수와 부정을 탐지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는데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BAM 시스템을 활용하여 무작위로 추출한 표본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수준과 상황변화 등을 바탕으로 급여수준의 정확도를 분석한다. 또한 BAM은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실업급여 수준에 대한 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검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Fuller, Ravikumar, and Zhang,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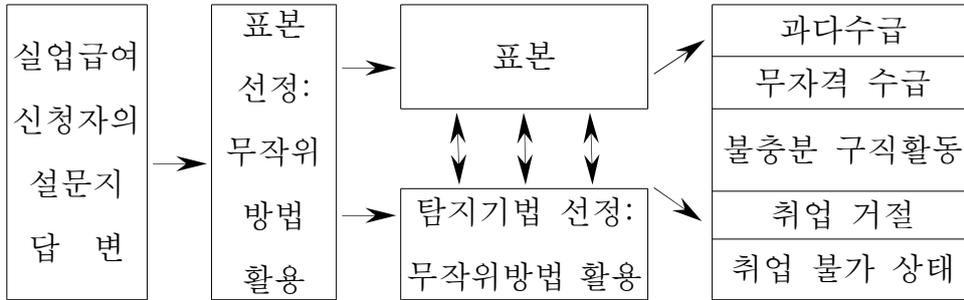
BAM의 부정수급 탐지과정은 시스템적으로 구현되기 때문에 단순한 도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아래의 <그림3-3>과 같이 실업급여 신청자가 신청을 하면서 소정의 양식에 따른 설문지에 답변을 하는 것이 제1단계이다. 이 답변 자료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이 된다.

BAM은 지난 몇 주간을 대상으로 모든 신청자를 모집단으로 하여 무작위 방식으로 사전대상표본을 추출하는 단계가 2단계이다. 무작위로 표본을 선정하고, 지난 한 주가 아니라 여러 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 번 표본으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다음 번 선정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제3단계는 표본을 대상으로 특정 탐지기법을 활용하여 부정수급을 탐지하는 작업을 시스템적으로 실시한다. 모든 표본을 대상으로 9개 탐지기법 모두를 활용하지 않고 특정 케이스에는 과다수급, 특정 케이스에는 무자격 수급 등과 같은 방식의 부정수급 탐지가 시작된다. 어떤 케이스에 어떤 탐지기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결정도 시스템적

으로 무작위 방법을 활용한다. 이 세 번째 단계를 거치면 부정수급 관련 자료가 정리되고 어떤 유형의 부정수급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

<그림 3-3> BAM의 부정수급 탐지과정



BAM에는 실업급여 신청자 정보, 사용자 정보, 그리고 실업급여 담당기관의 기록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자의 면담자료(claimant interview), 신청자의 자격관련 자료(eligibility investigation), 임금기록 정보(payroll records verification), 고용단절 정보(separation investigation), 구직활동 정보(work search contacts verification), 실업급여담당기관의 대응, 관리 및 심사 기록(unemployment insurance division actions and records review)을 이 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BAM은 매주 무작위로 추출한 표본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탐지하는데 아래 표와 같은 9개 기법을 기초로 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BAM은 임금수준, 고용 및 고용단절 검증(verification of wages and/or separation), 고용보험기록(unemployment insurance

records), 신청자 면담자료(claimant interview), 주정부의 신규채용 기록과 대조(crossmatch with state directory of new hires), 주정부의 임금수준 기록과 대조(crossmatch with state wage record files), 제3자와 비교하여 자격 검증(verification of eligibility with third parties), 구직활동 검증(verification of search contact), 노조기록 검증(verification with union), 구직/고용 관련 기록(job/employment records) 등의 탐지 기술을 갖추고 있다.

<표 3-6> BAM의 부정수급 탐지기법

<i>Detection Method</i>	<i>Percent of concealed earnings: fraud overpayments detected by method</i>
Verification of wages and/or separation	62.02
Unemployment insurance records	14.61
Claimant interview	10.41
Crossmatch with state directory of new hires	7.52
Crossmatch with state wage record files	1.86
Verification of eligibility with 3rd parties	1.38
Verification of search contact	1.31
Verification with union	0.71
Job/employment service records	0.17

Source: Benefit Accuracy Measurement Program, U.S. Dept. of Labor
Fuller, Ravikumar, and Zhang, Y. (2015)

BAM을 활용한 부정수급 탐지과정은 신청자가 소정의 양식에 의거한 설문지에 답을 하면서부터 시작된다. BAM은 전 사용자로부터 신

청자의 임금기록과 고용단절 관련 기록에 연결하여 부정수급을 탐지하는데 활용한다. BAM은 또한 실업급여 신청에 기록된 사용자와 신청자가 제출한 기록에 근거하여 구직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탐지한다. BAM은 이상의 자료를 활용하여 필요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의 자격심사를 실시하기도 한다(Howell and Azizoglu, 2011).

무작위로 표본을 매주 추출하는데 이전 몇 주 동안에 생성된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수급이 거부된 신청자를 대상으로도 별도로 표본을 추출한다. 표본으로 추출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시한 9개 탐지 기법 모두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9개 기법 중 하나를 무작위로 적용시키는 방법으로 탐지기법을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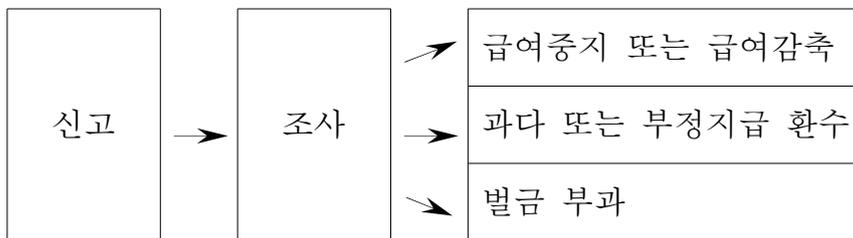
하나의 표본에 복수의 탐지기법이 활용되기도 한다. 또한 한 번 표본으로 선정된 표본이 다음번의 표본 선정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 무작위로 표본을 선정하기 때문에 몇 차례 더 선정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이 같은 방법은 한 번 표본으로 선정되어 부정수급에 문제가 없었던 수급자가 ‘이후에는 적발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부정수급을 할 수 있다는 심리적 착각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활용된다.

BAM에서 부정수급 표본에 선정되면 선정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린다. 당사자는 소정의 양식에 따른 설문지에 소상히 답변을 할 의무가 있다. 답변을 방문, 전화, 또는 메일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사관과 면담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3. 영국의 부정수급 분석

영국에서 부정수급은 고용연금부(DWP, Dept. of Work and Pension)의 과 수준의 담당부서 급여부정수급과(Benefit Fraud Division)에서 담당한다. 복지 부정수급 조사범위는 공공부조에서 연금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 전반이다(Button, 2011). 영국은 <그림3-4>와 같이 신고와 조사라는 단순한 과정을 거쳐 부정수급에 대한 처리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 중지 또는 급여감축을 하게 되며, 과다 또는 부정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조치를 한다. 여기에 더하여 벌금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한다.

<그림 3-4> 영국의 부정수급 처리 과정



a. 부정수급 신고

신고는 전화, 온라인, 그리고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고는 <www.gov.uk/report-benefit-fraud>에서 가능하다. 신고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해야 하는데 양식은 1)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수급자에 대한 질문, 2) 부정수급 의심 파트너에 대한 질문, 3) 신고자에 대한 질문, 그리고 4) 기타 질문으로 나누어져 있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수급자와 그 파트너에 대한 질문은 같다. 부정수급의 종류,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개인, 인상착의, 고용상태, 그리고 부정수급의 차량 등 5가지 유형의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다.

첫째, 부정수급의 종류에 관하여서는 누가 ‘giro cheque’ 또는 ‘order book’을 현금화하는지,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혼자 산다고 하는지, 보조금을 중복 신청하는지, 저축 내역에 관하여 밝히지 않는지,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은지, 수입에 관하여 밝히지 않는지, 그리고 일을 하면서 보조금을 신청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답하도록 되어 있다.

둘째, 누가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자인지에 대해 이름, 성별, 가명, 주소, 전화번호, 사회보험번호(NIN, National insurance number), 생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하고, 보조금 종류를 면세대상, 장애인 생활급여, 주택급여, 능력상실 급여, 소득지원, 실업급여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셋째, 부정수급자의 인상착의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인종, 체형, 체구, 안구 색, 안경착용 유무, 머리색, 머리모양, 기타특징을 제시하여야 한다.

넷째, 고용상태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정수급자가 일을 한다면 부정수급 사실을 회사에서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주의 이름, 주소뿐만 아니라 직업에 대한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다섯째, 부정수급자의 차량에 대해서 제조사와 차종, 차량번호, 차량색의 내용을 제시해야한다.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질문은 익명을 원한다면 익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신고자가 조사나 수사과정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면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메일주소를 제시하여야 한다.

b. 부정수급 조사

영국의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는 복수의 기관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수급자는 고용노동부 관계자, 세무담당자, 제대군인을 관리하는 보훈처 관계자, 또는 지방정부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는다. 또는 부정수급조사관(FIO, Fraud Investigation Officer)의 방문을 받거나 조사관과의 면담을 위해 해당 장소에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다(Button, 2011). 부정수급이 의심되어 조사를 받는 기간 중에는 해당 복지급여가 일시 중단된다.

c. 부정수급 결과 처리

복지 부정이 발생되면, 발생 그 자체가 사회적 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 자격 없는 수혜자가 복지급여를 받음으로써 자격 있는 수혜자의 수급 기회를 박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Levi and Burrows, 2008).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급여중지 또는 급여감축, 과다 또는 부정지급 환수가 이루어지며 심한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부정수급의 경중에 따라 부정수급조사관이 결정을 내린다.

d. 중지 및 감축 대상 복지급여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한 후 급여를 중지하거나 감축할 수 있는 복지급여가 있고, 부정수급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가능한 복지급여가 있다(Levi and Burrows, 2008). 영국의 고용연금부에 의하면 중지 또는 감축 가능한 복지급여의 종류는 21개로 다음과 같다.

- 돌봄이 수당(Carer's Allowance)
- 고용지원 수당(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 능력상실 급여(Incapacity Benefit)
- 소득지원(Income Support)
- 재해사망 급여(Industrial Death Benefit)
- 재해·상해·장애 급여(Industrial Injuries Disablement Benefit)
- 재해·상해 소득감소 수당
(Industrial Injuries Reduced Earnings Allowance)
- 재해·상해 퇴직 수당(Industrial Injuries Retirement Allowance)
- 재해·상해 취업불능 지원수당
(Industrial Injuries Unemployability Supplement)
- 구직자 수당(Job seeker's Allowance)
- 중증 장애 수당(Severe Disablement Allowance)
- 주택 가치에 부과하는 지방세 보조급여(Housing/Council Tax Benefit)
- 연금 크레딧 급여(Pension Credit)
- 유니버설 크레딧 급여(Universal Credit)
- 참전 장애 연금(War Disablement Pension)
- 참전 미망인 연금(War Widow's Pension)
- 참전 연금 취업불능 지원수당(War Pension Unemployability Supplement)
- 저임금 종사자에 대한 참전 연금 수당
(War Pension Allowance for Lower Standard of Occupation)
- 미망인 부모 수당(Widowed Mother's/Parent's Allowance)
- 미망인 연금/사별 수당(Widow's Pension/Bereavement Allowance)

·근로세 크레딧 수당(Working Tax Credit)

e. 중지 및 감축 불가능한 복지급여

영국의 고용연금부에 의하면 부정수급이 확인되어도 감축하거나 중지가 불가능한 복지급여는 17개 종류가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령 돌봄지원 수당(Attendance Allowance)

·사별 일시 지원금(Bereavement Payment)

·아동급여(Child Benefit)

·아동 세금 크레딧 급여(Child Tax Credit)

·크리스마스 보너스(Christmas Bonus)

·지방세 보조 급여(Council Tax Benefit)

·장애인 생활 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승계 퇴직연금(Graduated Retirement Benefit)

·보호자 수당(Guardian's Allowance)

·산업재해 돌봄지원 수당(Industrial Injuries Constant Attendance Allowance (*where a Disablement Pension is payable*))

·산업재해 예외적 중증 장애 수당(Industrial Injuries Exceptionally Severe Disablement Allowance (*where a Disablement Pension is payable*))

·만성질환·장애 독립생활 지원수당(Personal Independence Payment)

·국가연금(State Pension)

·사회기금으로 제공되는 추가 수당(Social Fund Payments): 구직자 등 대상

·참전연금 돌봄지원 수당(War Pension Constant Attendance Allowance)

·참전연금 예외적 중증 장애 수당

(War Pension Exceptionally Severe Disablement Allowance)

·참전연금 이동 지원 수당(War Pension Mobility Supplement)

f. 예외 규정

영국의 고용연금부에 의하면 복지 부정수급에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하 8개 복지급여 중 하나를 받고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수급을 감축하거나 중지할 수 없다. 개인의 삶과 생활에 매우 중요한 복지급여이기 때문에 이 같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확산가능 중피종 수당(Diffuse Mesothelioma Scheme in 2008)

·임신건강수당(Health in Pregnancy Grant)

·출산 수당(Maternity Allowance)

·진폐증 수당(Pneumoconiosis, Workers' Compensation in 1979)

·법정 입양 수당(Statutory Adoption Pay)

·법정 산휴 수당(Statutory Maternity Pay)

·법정 육아수당(Statutory Paternity Pay)

·법정 병가 중 급여(Statutory Sick Pay)

4. 캐나다의 부정수급 분석

캐나다에서는 생산적 복지(work for welfare)프로그램이 도입된 1990년대 초기에 복지부정수급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Mosher and Hermer, 2011). 캐나다에서의 복지부정수급은 'welfare fraud,' 또

는 ‘social assistance fraud’로 표현된다. 연방제를 채택하는 캐나다에서는 주정부 차원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관용 원칙(no tolerance)을 적용한 바 있는 온타리오(Ontario)주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1995년부터 2003년 사이에 복지부정수급에 대해 엄격한 규제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한 바 있다(Varma and Ward, 2014; Mosher and Hermer, 2011). 온타리오에서는 「사회부조개혁법」 Social Assistance Reform Act를 1997년에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부정수급자에게는 복지수급 자격박탈과 추가로 벌금과 같은 행정처분도 부과하기 시작했다(Mosher and Hermer,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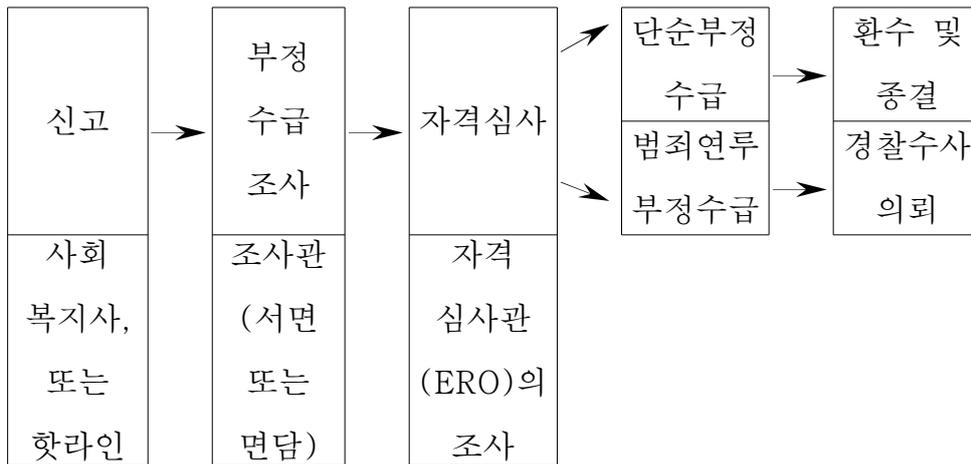
그 내용은 부정수급 초범인 경우에는 3개월, 재범인 경우는 6개월 자격박탈이었다. 2001년에는 부정수급자에게는 평생 동안 복지수급을 금지하는 무관용 방식을 도입했다. 진보정부가 집권한 2004년부터는 평생 동안 복지수급을 금지하는 무관용 원칙은 폐지되었다(Varma and Ward, 2014).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었을 당시의 부정수급 처리 방식은 아래의 <그림3-5> 같이 5단계 2트랙이었다. 사회복지사나 핫라인을 통하여 신고가 들어오면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가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사회복지담당자의 책임 하에 조사를 실시한다. 서면조사만으로는 부족할 경우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수급자에 대한 면담조사도 실시할 수 있었다. 부정수급 여부가 이 단계에서 판명이 난다.

부정수급으로 결정이 나면 사건은 자격심사관(Eligibility Review

Officer)에게 넘겨지고, 자격심사관은 자격이 있으나 수급수준이 높은 케이스 등 단순부정으로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급 수준을 줄일 수도 있고, 과다 지급된 부분의 환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한다. 그러나 범죄수준의 복지수급 부정으로 의심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

<그림 3-5> 부정수급 처리과정



무관용 원칙의 폐지에는 엄격한 범죄수사 원칙이 사회정책에 적용될 경우 사회정책이 가지는 본래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였다. 실제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될 당시에는 일선 사회복지사가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Varma and Ward, 2014; Maki, 2011). 한 번의 부정수급으로 평생 자격박탈의 굴레를 써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무관용 원칙을 중심으로 하는 부정수급에 대한 규제는 ‘범죄의 사회적 구성’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Mosher and Herer, 2011).

5. 호주의 부정수급 분석

호주에서는 부정수급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고 있다. “복지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중점관리보다는 복지급여를 포함한 “정부보조금” 전반에 대한 부정수급으로 정리하고 있다(Henman and Marston, 2008). 복지급여 부정은 정부보조금 부정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있다. 부정수급의 개념을 “속임수나 기타 방법으로 부당하게 보조금 또는 급여를 받거나 정부에 손실을 끼친” 행위로 정리하고 있다(ACCC, 2014).

부정수급 통제 책임은 1997년에 제정된 “재정관리 및 책임법 (*Financial Management and Accountability Act*)”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 의하면 특정 기관에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통합관리를 하지 않고 개별 부처에서 부처 장·차관의 책임 하에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각 부처의 부정수급 근절대책은 검찰총장실에서 채택한 부정통제 가이드라인(Fraud Control Guidelines)에 따라 부정수급 통제계획(Fraud Control Plan)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집행 책임은 조직 내부의 인사가 아니라 외부 인사가 담당하도록 하였다. 검찰총장을 부정수급 문제의 중심에 둬으로써 부정수급을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사기 수준의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부정수급 통제를 위한 틀은 2014년 제정된 국정관리 성과 및 회계책임에 관한 법(*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에서 규정하고 있다. 호주 복지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

의 복지 부정수급도 같은 틀에서 통제한다. 호주 복지부는 센터링크(Centrelink)를 통하여 복지 서비스 및 급여를 제공하는데 센터링크는 복지수급자 유형을 클릭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검색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표3-7>에서와 같이 센터링크를 열면 급여나 서비스가 필요한 복지수급자 창이 나오고, 해당 창을 클릭하면 제공 가능한 서비스 창이 열려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받는다. 구직자의 경우 “Job seekers” 창을 클릭하여 열면 바로 아래에 새로운 창이 열린다. 구직자에게 제공되는 수당을 받는 방법, 구직 기간 동안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법, 장애,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신체적 문제가 있으면서 구직을 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https://www.humanservices.gov.au/customer/services/centrelink/centrelink-online-accounts>).

<표 3-7> 호주의 Centrelink 운영사례

Families	Separated Parents	Job Seekers	Older Australians	Your Health	People with Disability
Students & Trainees	Migrants, Refugees & Visitors	Carers	Rural & remote Australians	Indigenous Australians	Help in an Emergency

▶Payment for job seekers
▶Looking for work
▶Disabled, ill or injured and looking for work
▶Indigenous Australians looking for work, studying or training
▶Australian apprentices
▶Self Service
▶Retrenched or made redundant
▶Managing your money

호주의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 채널은 온라인, 전화, 우편 등 다양하다. 이 중에서 온라인(<https://www.humanservices.gov.au/customer/contact-us/reporting-fraud>)으로는 신고 양식이 제시되어 있어 양식에 따라 답변을 하면 처리된다. 첫 페이지는 부정수급자가 개인인지 단체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해당 칸에 클릭만으로 되는 수준이다.

이 질문에 답을 한 후 다음 쪽으로 가면 신고자 정보 제공을 위한 양식이 나온다. 정보 제공을 원하면 이름, 주소, 전화번호, 통화 가능한 시간을 제시하면 되고, 원하지 않으면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도 있다. 부정수급에서도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페이지에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신고하고자 하는 부정수급자의 혼인여부,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성별, 및 국적을 제시하여야 하고, 부정수급하고 있는 복지급여나 서비스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복지부 공무원이 해당 복지 수급에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마지막 넷째 페이지에는 세부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얼마나 오랫동안 부정수급이 이루어져왔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부정수급에 공모자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이다.

호주의 부정수급 신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Prenzler, 2012)를 보면 전체 부정수급 케이스 중 70% 정도가 복지 관련이며, 센터링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신고기관이 복지부 센터링크인 경우의 비중이 60.8%, 68.9%, 그리고 69.9%로 증가하고 있었다. 연방 경찰에 신고하는 비중은 꾸준히 10%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주정부를 포함한 지방정부와 지방경찰에 신고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약간 높아지고 있었다.

<표 3-8> 부정수급 신고기관 유형

신고기관	2007-08		2008-09		2009-10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복지부 센터링크	3,740	60.8%	4,494	68.9%	4,684	69.9%
호주 연방경찰(AFP)	619	10.1%	675	10.3%	699	10.4%
신용 및 파산관리기관	267	4.3%	285	4.3%	285	4.2%
주정부 및 지방경찰	222	3.6%	258	3.9%	293	4.3%
호주 세무 당국	221	3.5%	165	2.5%	157	2.3%
기타	1,076	17.5%	637	10.1%	574	8.9%
합계	6,145	100.0%	6,514	100.0%	6,692	100.0%

자료: Prenzler, 2012.

부정수급 통제 및 처리 과정은 대부분의 부처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래의 <그림3-6>에서와 같이 6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제1단계는 부정수급 위험심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업무이다. 추가적으로 기관의 조직, 기능, 혹은 활동의 변동이 있으면 위험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험심사는 내외적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요소별로 위험 수준을 설정한 후에 일정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초기 대응을 하는 방식이다. 위험심사는 Commonwealth Fraud Control Guidelines 2011, AS/NZ ISO 3100, 2009 Risk Management and the Australian Standard 8001-2008 Fraud and Corruption Control에 의거하여 철저히 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단계는 부정수급 위험감지를 위한 수시 모니터링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제2단계는 부정수급 통제계획을 개발하여 집행하는 단계이다. 위험 심사를 실시한 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보조금이나 복지급여에 대해 통제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따른 예방책을 마련하여 집행하는 단계라고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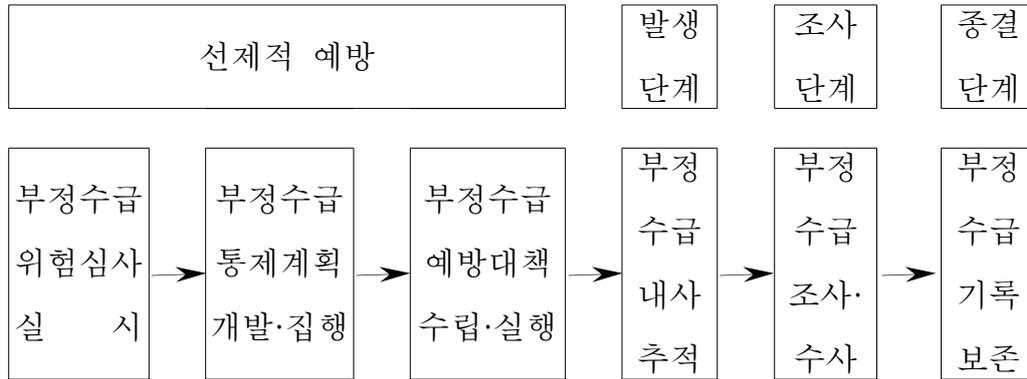
제3단계는 제2단계에서 수립한 통제계획을 기초로 부정수급의 선제적 예방대책을 실행에 옮기는 단계이다. 구체적 활동으로서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에게 어떤 일을 행하면 부정수급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하고, 그 행위를 할 경우 부정수급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도록 하는 단계이다. 제3단계까지가 부정수급의 예방단계라고 설명할 수 있다.

제4단계는 집행과정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추적하는 단계이다. 부정수급 담당자는 부정수급을 인지하게 되면 직속상관을 거쳐 부정수급 통제관(FCO, Fraud Control Officer)에게 보고하고 이를 추적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호주는 이 단계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한 조직 내에서 스스로 조사를 벌이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부정수급 추적 작업은 해당기관의 부정수급 업무 담당자가 보조금 사업 담당자 및 FCO에게 부정수급 사실을 비밀리에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야 하며 FCO의 책임 하에 내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단계는 내사단계에서 파악한 부정수급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확정하는 단계이다. 부정수급 수사는 호주의 연방 경찰이 담당한다.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록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

는 단계가 마지막 단계이다.

<그림 3-6> 부정수급 통제 및 처리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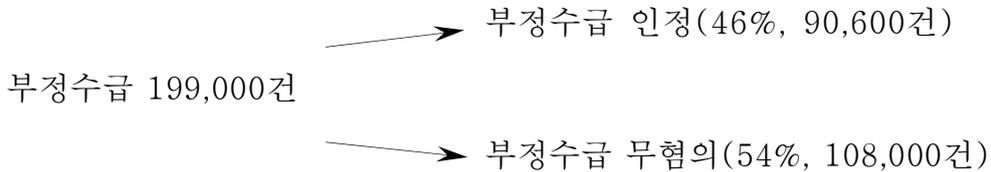
6. 스웨덴의 부정수급 분석

스웨덴은 대표적 복지국가 중 하나이다. 1951년 복지국가 체제를 수립하면서 궁핍한 시민에게는 조건 없이 급여를 제공한다는 보호중심의 복지를 시행해왔지만 복지의 오남용과 같은 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었다. 복지 부정수급으로 인한 예산손실의 규모가 1억4,100만 달러에 이르렀고, 사회보험청(Social Insurance Administration)은 2006년 복지 부정수급 조사단(Squad of Investigators)을 출범시켰다(Ekman, 2007).

스웨덴에서는 부정수급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데 전인구의 3.1%가 부정수급에 노출되어 있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이다. 2015년 통계에 의하면 스웨덴에서 총 199,000건의 부정수급이 있었으며, 이 중에서 54%는 부정수급에 대한 혐의가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고,

46%만 부정수급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BRA, 2016). 부정수급으로 인정되는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3-7> 부정수급 혐의 인정과 무혐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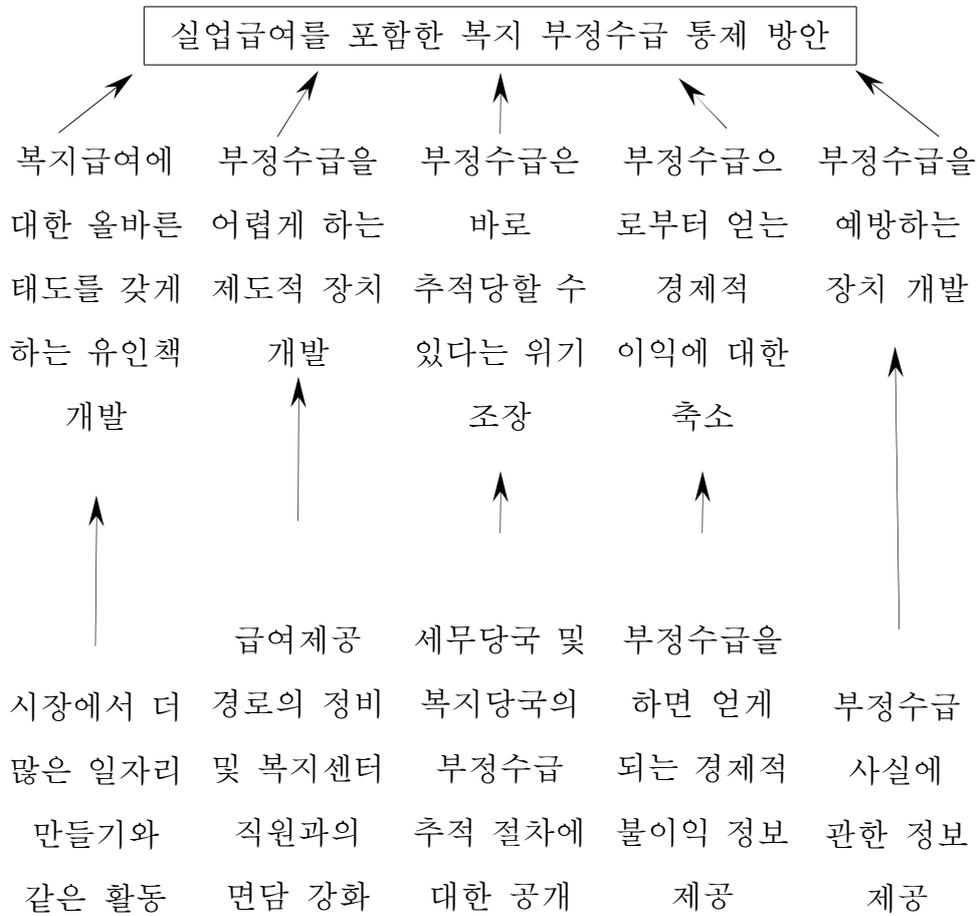


스웨덴은 복지 부정수급을 경제범죄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대책수립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 부정수급에 대한 대응방식은 범죄행위로 접근하지 않고, 복지수급의 교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스웨덴 국립 범죄예방위원회(Swedish National Council for Crime Prevention, 2007)가 제시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책으로 내놓은 아래 <그림3-8>의 제안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부정수급을 하면 불이익을 받거나 경제범죄를 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보다는 부정수급에 대한 동기를 스스로 통제하게 하는 장치 중심의 예방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실업률을 줄이고, 실업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접근법이다. 부정수급이 어렵도록 복지급여 제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엄격히 하는 방안도 예방책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래도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실 중심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마지막 단계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림 3-8> 스웨덴의 복지 부정수급 통제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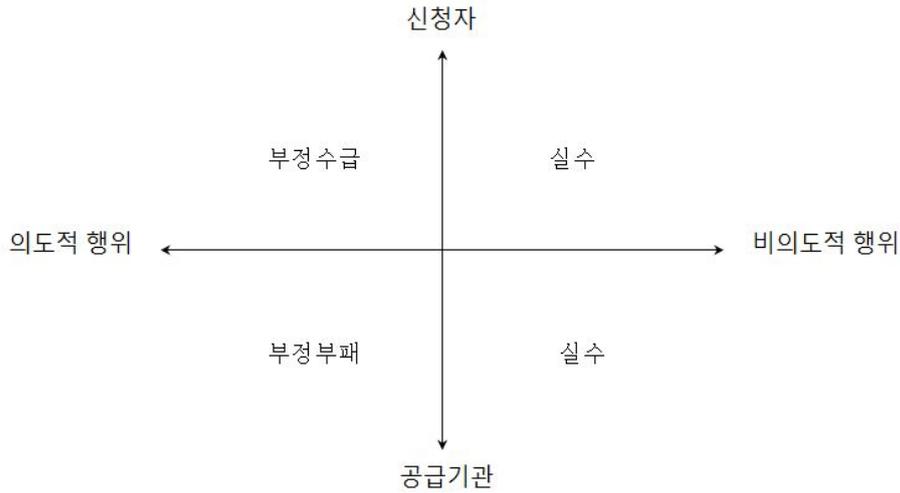
자료: Swedish National Council for Crime Prevention (Brå), 2007

7. 각국 비교 분석

복지급여나 서비스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령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만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실수일 수도 있고, 부정부패 행위일 수도 있으며, 부정수급일 수도 있다. 그 유형은 아래의 <그림 3-9>와 같이 4개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복지급여 혹은 복지 서비스 신청자가 의도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복지를 수급하였을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분류되고, 정부나 공공기관 등 복지급여 및 복지 서비스의 공급자가 의도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부정부패로 분류된다. 국가에 따라 부정한 방법의 복지수급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 신청자나 공급기관이 특별한 의도 없이 복지급여나 서비스를 제공받았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실수로 인정한다(van Stolk, 2014). 물론 모든 국가에서 비의도적으로 행한 실수도 부정수급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경우는 특별한 행정처분이 없는 환수 정도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림 3-9> 부정수급의 유형



캐나다와 호주 양국에서는 수급자가 의도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 보고 강력한 대응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미국과 영국은 수급자의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캐나다와 호주와 다를 바가 없으나 그 사후조치가 두 나라 만큼 강력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van Stalk(2014)이 지적했듯이 스웨덴은 신청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공급기관의 책임도 상정하고 있어 그 접근방법이 영미권의 국가와는 차이가 있었다.

복지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는 정치적 이념과 일반 시민의 복지에 대한 관점에 따라 그 탐지 범위와 사후처리의 강약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복지 부정수급에 관한 비교대상 국가들의 공통점은 고도의 전문성이었다. 복지급여와 연금급여 등 복지 일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알아야 부정수급을 추적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출발한 전문성이었다.

미국은 부정수급 탐지의 전문성을 실업급여 정확도 계측(BAM) 시스템으로 구현하고 있다. 부정수급 실업급여의 유형을 정리한 후 실업급여 신청자 정보, 실직자의 사용자에 나타난 정보, 실업급여 담당 기관의 기록 정보를 비교하여 급여를 받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부정수급자를 모두 걸러낼 수는 없어도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여 부정수급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수급 예방효과도 동시에 거두고 있다.

영국의 사회복지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고용연금부는 부정수급 관리도 복지업무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따라서 복지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와 사후 처리는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부정수급 전문성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부정수급조사관(FIO)을 활용하여 보훈분야까지 포함하여 복지부정을 탐지하여 바로잡으려고 하지만 생계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보류하는 방식의 사후처리를 실시하고 있다,

한때 복지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까지 적용한 적이 있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 영국과 유사한 차원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격심사관(ERO)제도를 도입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수준을 높인 케이스 등 단순부정으로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급 수준을 줄이고, 과다 지급된 부분에는 환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하지만 범죄수준의 부정으로 의심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

호주의 전문성은 각 부처 장의 책임 하에 부정수급을 내사하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호주 경찰에 의뢰하여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구현하고 있다. 내사 단계에서 FCO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수급 조사과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식은 영국의 FIO와 유사한 접근법을 시행하고 있다.

스웨덴의 전문성은 복지급여 우선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대표적 복지국가답게 부정수급의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복지급여나 서비스의 전달과정을 치밀하고 명쾌하게 정리하면 부정수급이 줄어든다는 복지주의 원칙에서 부정수급을 처리하고 있다.

<표 3-9> 외국의 부정수급 관리방법 비교

국가	전담기관	중점 대상	특징
미국	주정부 복지 담당 부서	공공부조 및 실업급여에 중점	공공부조 부정수급과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분리해서 관리하나 실업급여에 중점, 실업급여 정확도 계측(BAM) 시스템 활용하여 무작위 표본 추출로 부정수급 탐지
영국	고용 연금부	복지, 연금, 보훈 관련 급여 전반	공공부조, 국가연금, 실업급여, 보훈복지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부정수급을 중앙집권적 관점에서 탐지; 부정수급 환수에 그치지 않고, 급여감축이나 급여중지 등 행정처분 추가; 벌금부과도 가능; 복지급여 유형 분류에 따라 후속조치 실시; 부정수급조사관(FIO) 제도 활용
캐나다	주정부	복지 전반이지만 공공부조에 중점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채택하여 일정기간 혹은 평생 급여중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있었으나 현재는 자격심사관(ERO) 제도를 두어 수급 조정 및 환수 수준으로 처리
호주	호주 정부의 각 부처	복지급여 및 정부보조금	복지급여 및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부패척결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실시; 해당부처 장의 책임하에 검찰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정수급에 대한 선제적 예방에서부터 종결 후 환수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 부정수급 위험감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선제적 예방에 중점
스웨덴	사회 보험청	사회보장 및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하면 불이익을 받거나 경제범죄를 범하는 행위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보다는 부정수급에 대한 동기를 스스로 통제하게 하는 장치 중심의 예방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

제4장 현황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1. 부정수급 처리과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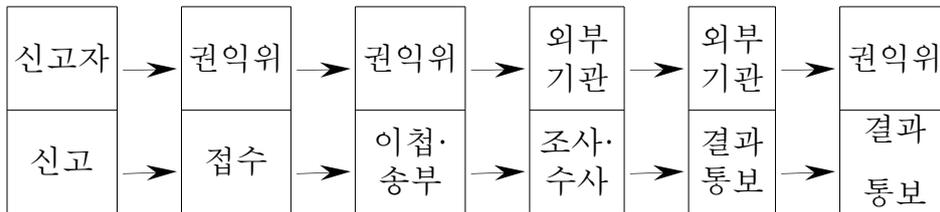
정부의 복지·보조금 예산이 증가하는 만큼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복지비 및 정부 보조금 사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저하가 수반되고 있다. 또한 현재 부정수급 관련 상담(콜)센터는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어 종합적 관리뿐만 아니라 처리의 일관성이 문제가 되어 왔다. 따라서 부정수급에 대한 효율적 신고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13년 10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권익위 내에 설치하였고, 2015년 1월부터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부정수급의 신고에서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이 6단계를 거친다. 신고자로부터 신고가 있으면 권익위원회는 상담을 거쳐 접수 여부가 결정된다. 접수가 되면 권익위원회는 조사관의 기초조사 및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권익위에서 운영하는 내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첩 및 송부를 받은 기관에서는 조사와 수사에 착수하여 그 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면 권익위원회는 마지막으로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처리를 종결한다.

부정수급 6단계 처리과정 중에서 권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단계는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6단계이다. 이 중에서

3단계와 6단계는 전달 외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그러나 1단계와 2단계는 권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두 단계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표 4-1> 부정수급 처리과정



부정수급 처리과정의 첫 단계로 신고자에 의한 신고가 이루어진다. 신고는 온라인 방식, 우편방식, 방문신고 방식, 팩스 신고 방식, 부패공익신고 앱을 통한 방식, 그리고 전화 방식이 있다. 권익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부정수급 행위 신고에 따른 처리 결과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의 직접적 효과를 가져 오게 한 경우, 신고자에게 최고 30억 원까지 신고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1) 신고가 들어온다는 것은 부정수급의 발생이 의심되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부정수급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례교육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총 11회 개최하여

2,830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얻었으나 체계적인 감지시스템 부재로 예방이 어렵다. 2)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어도 신고센터를 모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신고센터 알리기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부정수급 신고는 대부분이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신고 소스의 다양성이 전제가 되어야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유형의 부정수급 사례가 신고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신고 단계에서 다양한 외부기관의 데이터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시스템 구축이 부재 상태였다. 따라서 신고 전에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던 선제적 대응방안이 부재 상태라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시할 수 있다.

둘째, 신고에서 접수 단계는 또 다른 큰 의미가 있다. 부정수급 사건으로 간주할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판단이 잘못되면 부정수급 사건이 묻혀 국고가 사장될 수도 있고,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려운 문제를 사건화 하여 당사자의 명예와 인권이 침해받을 수도 있다. 또한 정책집행이 지연되어 복지수급자나 보조금 수급자에게 신속한 전달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부정수급 사건의 신속하고도 효율적 처리를 위해 센터인적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관리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센터의 정원 24명에 현원은 21명으로 3명이 결원이다. 정원을 기준으로 볼 때 권익위원회의 인력은 9명뿐이고, 나머지 15명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8명, 경찰 1명, 공공기관 6명으로 구성된 파견인력이다.

센터는 정부협업 조직으로서 특징을 갖는다. 정원 및 현원 관련 구체적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2>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의 정원 및 현원

구분	총계	공무원							민간 파견	기간제 근로자
		소계	3·4 급	4·5 급	5급	6급	7급	경감		
정원	24	17	1	1	2	12	-	1	6	1
현원	21	14	1	-	2	9	1	1	6	1
결원	△3	△3	-	△1	-	△3	1	-	-	-

※ 2016. 8. 26. 현재 결원: 위원회 2명, 산자부 파견 1명

타 정부기관으로부터의 파견인력은 복지분야와 보조금 분야에서 받는다. 복지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에서 파견인력을 받고, 6개 공공기관에서도 파견인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내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공단, LH, 근로복지공단, 심평원, 그리고 장학재단이다. 보조금 분야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그리고 경찰청이다.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1)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신고 접수 여부를 결정해야 할 뿐 아니라, 이 어느 누구든 수용할 수 있는 과정상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신고 후에 어떤 절차를 거쳐 접수를 결정하는지에 대한 공식적 절차가 부재한 상태이다. 2) 월평균 신고건수가 250~300건에 이르고, 이 중 65~75건이 사건으로 공식 접수되어 신고 대

비 접수 비율이 25~30% 정도이다. 3) 정부협업조직이라는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정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력만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직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외부에서 온 조직이기 때문에 부정수급 처리과정 상 안정적 관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셋째, 국민권익위원회가 타기관을 대상으로 행하는 이첩·송부는 일종의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 다만 조사·수사를 행하는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는 유지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명시적 역할 관계에 대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넷째, 조사·수사는 다양한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된다. 검찰, 경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100여개 기관이 개별적으로 행하는 업무이다. 센터는 업무의 끈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조사 및 수사의 중간 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과 활용이 필요하다. 다섯째, 조사·수사기관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고, 이를 신고자에게 전달하는 단계가 마지막 단계이다. 해당기관에서는 환수 등 후속조치를 하는데 이를 모니터링하는 공식 시스템 개발도 필요하다.

2. 부정수급 관련 부처 간 협업체계 분석

1)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의 조직 분석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의 조직은 권익위원회 인력 9명, 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인력 8명, 경찰 1명, 그리고 6개 공공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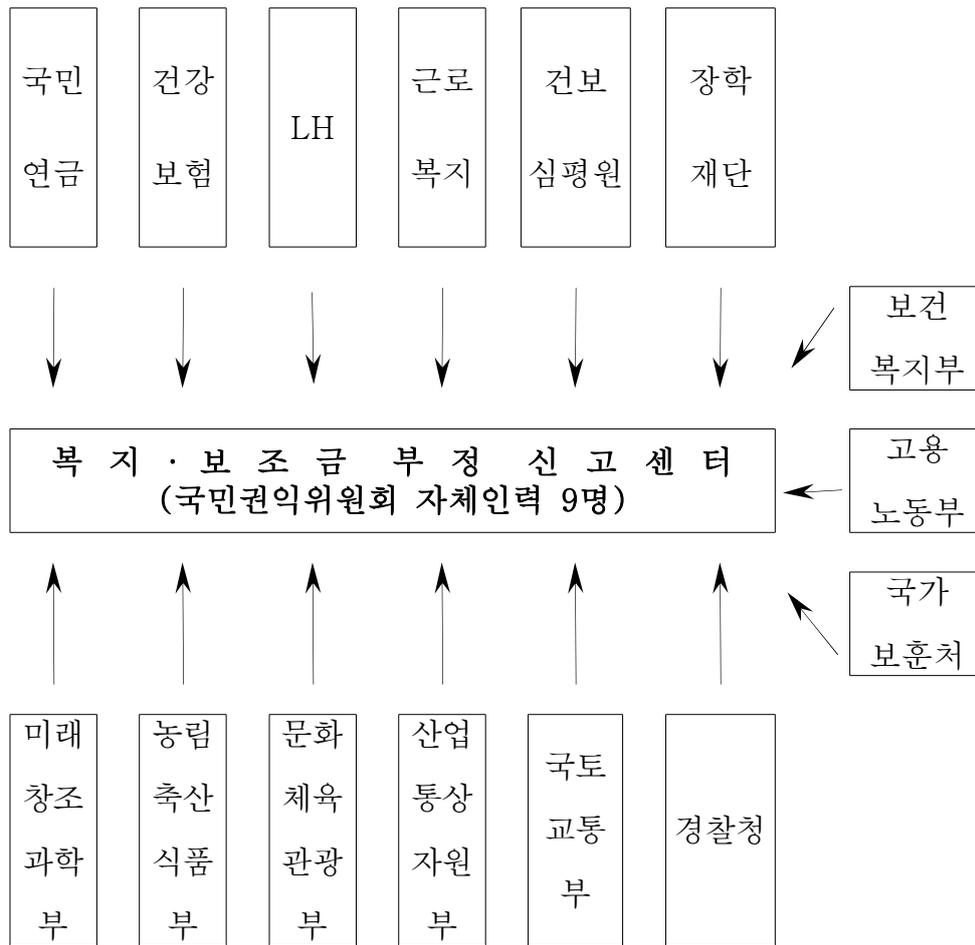
에서 파견된 인력 6명으로 구성된 정부협업 조직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16개 기관에서 파견된 24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아래 <그림 4-1>의 상단에는 인력을 파견한 공공기관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건보심평원 등 3개 기관으로 가장 많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LH는 국토교통부, 장학재단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교육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는 부처 차원에서도 공무원을 신고센터에 파견하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이중 삼중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2016년 현재 공공기관은 321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에서 한국전력공사나 한국가스공사와 같은 공기업이 30개, 한국장학재단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같은 준정부기관이 89개, 그리고 기타공공기관이 202개에 이른다. 보건복지 및 교육 유관 공공기관으로부터의 파견인력만 활용할 경우 나머지 유관기관과 관련된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나누고 공기업은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그리고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신고센터에서 파견을 받을 경우 유형별로 1~2명씩 받아 해당 유형의 공공기관의 부정수급 문제를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그림 4-1>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의 조직구성



<그림 4-1>의 우측에 제시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 3개 부처는 복지보조금과 관련이 깊은 기관으로서 기관마다 1명씩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에 파견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복지보조금 유관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의 파견 인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는 <그림 4-1>의 하단에 제시된 미래

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는 보조금 유관기관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은 조사 및 수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의미를 두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부는 17개부, 5처, 16청, 2원, 6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센터에 파견을 보내는 부처는 제한적이고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보조금을 사용하는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 등 6개 부처 외에도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같은 장관급 기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은 차관급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에서의 파견인력은 없다. 적어도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를 집중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파견 인력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부처에서 파견 인력을 이 센터에 보낼 수는 없지만 한 부처에서 파견된 인력이 유관 부처 몇 개를 담당하는 방식의 파견인력 운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관계기관 협의체 활동 분석

권익위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는 일부부처의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처리하는 조직이 아니라 전 부처에서 일어나는 부정수급 문제를 처리하는 조직이다. 당연히 부처 간 협력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분석 결과 의미 있는 부처 간 협력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복지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이 협의체 방식으로 업무 협조를 논의하는 회의는 세 가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복지재정 효율화」 관계기관 회의,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 회의, 「국고보

조금 부정수급방지대책 공동협의체」 회의 등이다.

「복지재정 효율화」 관계기관 회의는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하며, 참석자는 국조실, 기재부, 복지부, 행자부, 국토부, 인사처, 권익위 등 15개 기관 차관급이다. 개최일정은 정한 바 없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리, 또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수시 개최가 가능하다. 논의되는 회의 주제는 복지재정 효율화 실천계획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내용이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 참석 위원은 복지부차관 주재 「복지재정 효율화 중앙지원단」 회의 수시 개최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다.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 회의는 기재부 2차관이 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한다. 참석자 중 정부 위원은 기재부 재정관리관, 미래부, 교육부, 행자부, 권익위 등 15개 부처 1급 공무원이고, 민간위원은 조세연, 행정연 등 보조사업 관련 민간전문가가 참석한다. 개최일정은 정해져 있지 않고, 위원장인 기재부 2차관이 중심이 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시로 개최한다. 회의주제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14.12.)” 후속조치로 설치된 ‘보조금 관리위원회’ 상정안건 논의가 중심이다. 이 회의에서는 부처별 보조금 사업 집행점검 등 추진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방지대책 공동협의체」 회의는 기재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추진단장이 중심이 되어 개최한다. 공동체 구성은 감사원 첨단감사지원단장,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장,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경찰청 수사1과장, 시스템개발사업단(ITCT 컨소시엄) 등이다. 여기에서는 부정수급에 관한 정보공유, 시

스텝 구축, 협업 등 국고보조금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공동대응 사항을 논의한다. 한시적 협의체로서 성격을 가지며, 운영기간은 2016년 4월 ~ 2017년 7월까지이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시로 개최하는 회의로서, 1차 회의는 2016년 4월 1일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다.

세 협의체 모두 실무적 차원에서 부정수급 신고를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치는 없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을 감지할 수 있거나 해당 정보에 접근 가능한 인사가 중심이 되어 부정수급 방지나 사후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아니다. 신고 센터에서 필요한 사항은 신고센터의 접근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실무차원에서의 협의체 운영이지만 모두 상위 협의체 수준이라는 점이 문제이다. 따라서 부처 중에서 복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실무자 수준의 협의체, 보조금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실무자 수준의 협의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부정수급을 신고하고 관리하는 실무자 수준의 협의체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

3. 복지·보조금 신고처리 실적 분석

1) 신고처리 실적 개요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월평균 230~300건으로 이 중에서 24~29%에 해당되는 70여개 부정수급 사례가 매월 접수되었다. 「신고센터」의 출범 이후에 그 월평균 건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크게 늘어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표 4-3> 부정수급 신고처리 실적 개요 (2016년 9월 기준)

연도	신고상담		신고접수		접수율 (%)	신고사건 접수·처리현황*					답변종결
	건수	월 평균	건수	월 평균		소계	이첩	송부	심사종결	조사중	
계	9,116	-	2,504	-	-	928	447	178	232	71	1,576
2016.9	2,173	241.4	661	73.4	30.4	205	91	12	31	71	456
2015	3,602	300.2	896	74.7	24.9	355	204	59	92	-	541
2014	2,925	243.8	802	66.8	27.4	293	131	74	88	-	509
2013	416	-	145	-	-	75	21	33	21	-	70

* 실제 조사관에 배정되어 조사가 진행되는 사건

2) 신고 접수 경로 분석

신고접수 경로는 다양한 것처럼 보였지만 권익위의 홈페이지가 압도적으로 많은 95.5%를 차지하고 있었다. 우편접수가 다음으로 2.3%였다, 나머지 국민신문고, 팩스, 방문, 출장 등의 신고 경로는 1%도 미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처리하는 복지 분야 부정수급을 제외하고는 각 부처에서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센터의 홈페이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신고방식은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설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외의 부처로부터는 이첩을 받는 방식을 포함하여 홍보활동을 활용함으로써 신고 경로의 다양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4-4> 신고접수 경로

경로	빈도	퍼센트
국민신문고	8	0.8
방문	6	0.6
우편	21	2.3
출장	1	0.1
팩스	6	0.6
홈페이지	886	95.5
전체	928	100.0

3) 사건처리 경과일 분석

a. 사건처리 유형별 경과일 분석

평균 신고처리 경과일은 88일 정도였다. 짧은 경우 7일이 걸렸고, 최장 419일이 걸린 케이스도 있었다. 최대 경과 기간과 최소 경과 기간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처리 결과가 1년을 넘길 경우 ‘신속 처리’를 목표로 삼아야 할 신고 센터의 의미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4-5> 신고처리 경과일

	케이스수	범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경과일	928	412	7	419	88.32	49.029

처리결과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이첩이 과반 정도에 이르는 48.2%였고, 다음은 종결로 25.0%였다. 송부는 19.2%였고, 조사 중인 케이

스는 7.7%였다. 해당 부정수급 사건을 다른 기관에 보내는 것이 이첩이기 때문에 「신고센터」에서 사건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첩이 많으면 「신고센터」의 존재 의미가 그만큼 위축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4-6> 신고처리 유형

구분	빈도	퍼센트
송부	178	19.2
이첩	447	48.2
조사중	71	7.7
종결	232	25.0
전체	928	100.0

이첩 등 사건 처리 유형별로 걸리는 시간은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이첩에 가장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3개월이 넘는 99.28일이었다. 다음은 종결처리에 걸리는 시간은 81.27일이었다. 가장 적게 걸리는 처리 유형은 송부로서 75.57일이었다. 이 유형 역시 처리에 평균 2개월을 넘기고 있었다.

<표 4-7> 유형별 신고처리 경과시간

심사결과	평균	N	표준편차
송부	75.57	178	58.333
이첩	99.28	447	44.430
조사중	74.37	71	47.570
종결	81.27	232	45.548
전체	88.32	928	49.029

b. 복지비·보조금 영역별 경과일 분석

<표4-8>에서와 같이 복지비·보조금 영역별로 경과일 차이가 나타났다. 해양수산 영역의 경우 평균 111일로 경과일이 가장 길게 나타났다. 재정경제 영역은 가장 짧은 61.5일이었다. 복지 분야에 포함시킬 수 있는 보건복지, 노동, 여성가족, 그리고 보육이 포함되어 있는 교육 영역의 경우 80일에서 90일 사이여서 평균 수준인 88일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보훈 분야는 복지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이 경과되었다.

산업자원과 건설교통 영역은 실물경제 영역으로서 부정수급 처리에 90일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림 영역은 산업자원이나 건설교통과는 달리 처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77일에 불과했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이처럼 영역별로 처리기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부정수급 사건의 복잡성 여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8> 복지비·보조금 영역별 경과일 분석

복지비·보조금영역	평균	N	표준편차
건설교통	98.83	35	52.176
교육	89.90	10	40.402
국방	81.00	1	.
노동	83.67	130	51.671
농림	77.84	50	58.964
문화관광	85.30	23	37.427
보건복지	88.57	557	47.433
보훈	99.00	9	78.781
산업자원	94.72	89	48.247
여성청소년	85.60	10	31.704
재정경제	61.50	2	7.778
해양수산	111.80	5	95.232
행정자치	86.29	7	23.443
전체	88.32	928	49.029

$$F(df) = 0.741(12, 915), p = 0.711$$

부정수급의 케이스가 가장 많은 보건복지 영역만 추려서 경과일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4-9>에서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세부 분야별로 경과일 차이가 나타났다.

경과일이 가장 긴 분야는 보육과 취약계층 복지비였는데 평균 90일이 넘었다. 세 달이 넘게 소요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주거복지, 기초생활지원, 식품위생 분야는 가장 짧았으며 그 기간은 70일에서 78일 수준이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여성가족 분야의 처리 경과일은 대체로 80일에서 90일 사이로 평균 수준이었다.

<표 4-9> 보건복지 영역의 사건처리 경과일

보건복지	평균	N	표준편차
건강보험	89.42	117	55.626
고용보험	89.50	4	52.590
기초생활	78.27	173	37.885
보육	93.05	96	43.633
식품위생	75.50	2	21.920
여성가족	82.58	12	47.712
주택	70.00	9	40.835
취약계층	99.08	144	51.342
전체	88.57	557	47.433

$$F(df) = 2.601(7, 549), p=0.012$$

고용노동 영역을 세분화하여 사건처리 경과일을 분석한 결과 <표 4-10>에서와 같이 노동 분야가 가장 긴 88일이었고, 산재보험 분야가 가장 짧은 68일이었다. 고용보험과 노동행정 분야는 각각 82일과 81일로 영역의 평균 정도 수준이었다.

<표 4-10> 고용노동분야 사건처리 경과일

고용노동	평균	N	표준편차
고용보험	82.06	69	55.311
노동	88.39	49	51.974
노동행정	81.60	5	14.188
산재보험	68.00	7	22.000
전체	83.67	130	51.671

$$F(df) = 0.370(3.126), p = 0.775$$

5) 유형별 신고건수

복지보조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복지비보조와 보조금은 케이스 수로 볼 때 21.9%와 24.1%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복지와 관련한 부정이 75.9%로 비중이 매우 높았다.

<표 4-11> 유형별 신고처리 건수

	빈도수	비율
복지보조금	501	54.0%
복지비보조	203	21.9%
보조금	224	24.1%
합	928	100.0%

보건복지부 관련 사업의 부정수급이 557개 케이스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었다. 노동부 관련 케이스가 130개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체의 13.8%였다. 세 번째가 산자부 관련 부정수급으로 89개 케이스에 9.5%였다. 나머지 국토교통, 교육, 국방, 농림, 문광, 보훈, 여가, 재정경제, 해양수산 등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공공기관별 통계는 나와 있지 않아 파악을 할 수는 없었다. 다만 조사기관을 기초로 유추하면 건보, 국민연금, 근로복지 등 기관이 부정수급 신고 건수가 많은 기관으로 설명할 수 있다. 향후 공공기관별로 부정수급 통계를 정리하는 등 방법모색이 필요하다.

<표 4-12> 기관 유형별 신고처리 건수

중분류	빈도	퍼센트	소분류	빈도	비율
국토교통	35	3.8	도로교통	8	22.9
			물류	27	77.1
교육	10	1.1	고등교육	10	100.0
국방	1	.1	방위산업	1	100.0
노동	130	13.9	고용보험	69	53.1
			노동	49	37.7
			노동행정	5	3.8
			산재보험	7	5.4
농림	50	5.4	농업농촌	37	74.0
			임업산촌	7	14.0
			축산	6	12.0
문화관광	23	2.5	관광	2	8.7
			문화관광일반	1	4.3
			문화예술	9	39.1
			문화재	2	8.7
			체육	9	39.1
보건복지	557	59.8	기초생활	173	31.1%
			취약계층	144	25.9
			건강보험	117	21.0
			보육	96	17.2
			여성가족	12	2.2
			주택	9	1.6
			고용보험	4	0.7
			식품위생	2	0.4
보훈	9	1.0	보훈	9	100.0
산업자원	89	9.5	과학기술	20	22.5
			무역투자유치	2	3.3
			산업기술지원	67	75.3
여성청소년	10	1.1	여성가족	8	80.0
			청소년	2	20.0
재정경제	2	.2	국세	2	100.0
해양수산	5	.5	수산어촌	5	100.0
행정자치	7	.8	소방	2	28.6
			지방행정	5	71.4
전체	928	100.0			

5) 조사기관 분석

928개의 접수된 사례 중에서 조사기관이 확정된 622개의 사례만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 36.2%에 해당되는 225개만 단일기관이 조사나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고, 나머지 기관은 복수 조사기관이었다. 단일기관으로서 중앙부처 34개 케이스, 공공기관 24개 케이스, 경찰청 22개 케이스 순이었다.

단일 조사기관으로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138개 케이스로서 가장 많았다. 지방자치단체가 복수로 관여하는 사례를 모두 합치면 379개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이처럼 부정수급에 많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은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유효케이스의 55.3%에 이르는 344개 사건이 경찰의 조사 및 수사가 개입된 케이스였다.

<표 4-13> 조사·수사기관 분석

기관	빈도	비율	누적비율
중앙부처	34	5.5	5.5
지자체(광역+기초)	138	22.2	27.7
경찰청	22	3.5	31.2
검찰청	5	.8	32.0
감사원	2	.3	32.3
공공기관	24	3.9	36.2
중앙부처/중앙부처	2	.3	36.5
중앙부처/지자체	13	2.1	38.6
중앙부처/경찰청	72	11.6	50.2
중앙부처/검찰청	11	1.8	51.9
중앙부처/공공기관	2	.3	52.3
지자체/지자체	2	.3	52.6
지자체/경찰청	151	24.3	76.8
지자체/검찰청	5	.8	77.7
지자체/공공기관	12	1.9	79.6
경찰청/공공기관	9	1.4	81.0
검찰청/감사원	1	.2	81.2
검찰청/공공기관	2	.3	81.5
중앙부처/중앙부처/경찰청	10	1.6	83.1
중앙부처/지자체/경찰청	25	4.0	87.1
중앙부처/지자체/검찰청	3	.5	87.6
중앙부처/지자체/감사원	1	.2	87.8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1	.2	87.9
중앙부처/경찰청/경찰청	1	.2	88.1
중앙부처/경찰청/검찰청	1	.2	88.3
중앙부처/경찰청/공공기관	13	2.1	90.4
중앙부처/검찰청/공공기관	8	1.3	91.6
지자체/지자체/지자체	1	.2	91.8
지자체/지자체/경찰청	9	1.4	93.2
지자체/지자체/검찰청	2	.3	93.6
지자체/경찰청/검찰청	1	.2	93.7
지자체/경찰청/공공기관	10	1.6	95.3
지자체/검찰청/공공기관	1	.2	95.5
감사원/공공기관/공공기관	2	.3	95.8
중앙부처/중앙부처/중앙부처/검찰청	1	.2	96.0
중앙부처/중앙부처/지자체경/경찰청	4	.6	96.6
중앙부처/중앙부처/지자체/검찰청	2	.3	96.9
중앙부처/중앙부처/경찰청/공공기관	1	.2	97.1
중앙부처/지자체/경찰청/공공기관	3	.5	97.6
중앙부처/지자체/검찰청/감사원	1	.2	97.7
중앙부처/경찰청/공공기관/공공기관	3	.5	98.2
지자체/지자체/지자체/경찰청	4	.6	98.9
경찰청/공공기관/공공기관/공공기관;	1	.2	99.0
중앙부처/중앙부처/중앙부처/중앙부처/경찰청	1	.2	99.2
중앙부처/중앙부처/중앙부처/지자체경/경찰청	1	.2	99.4
중앙/중앙/중앙/검찰청/공공기관/공공기관	1	.2	99.5
중앙부처/지자체(5)/경찰청;지자체(7)/경찰청 기타	3	.6	100.0
전체 (306 결측)	622	100.0	

6) 부정수급 규모 분석

2016년 「신고센터」에서 부정수급으로 적발한 금액은 261.4억이었다. 2016년도를 기준으로 복지예산, 국고보조금, 그리고 R&D예산을 합한 금액은 202.1조였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122.9조 였고, R&D 예산은 18.9조 그리고 국고보조금 60.3조 중 복지부분과 중첩되는 29.7조를 제외하면 30.6조였다. 이같은 예산 총액 172.4조 중에서 적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적발액 비율} &= \text{적발액} / \text{복지예산} + \text{국고 보조금} - (\text{국고보조금 중} \\ &\quad \text{복지분야예산}) + \text{R\&D} \\ &= 261.4\text{억} / 172.4\text{조} = 0.00015 = 0.015\% \end{aligned}$$

예산 대비 적발액의 비중은 0.015% 로서 높은 비중은 아니지만 국가예산 절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간과할 수 없는 수치라고 말할 수 있다.

7) 환수 결정액 분석

「신고센터」 설치 이후 최근까지 총 환수금액은 589억4,100만원 수준이었다. 영역별로는 보건복지 영역이 부정수급 건수도 가장 많았고, 환수금액도 가장 많았다. <표4-14>에서와 같이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총 557건 중 170건에서 환수가 있었으며, 그 액수는 433억

3,100만원 수준이었다. 총환수금액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수준이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최대 환수 금액과 최소 환수금액 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최대 200억8,900만원이었으며, 최소 8만원이었다.

두 번째로 많은 영역이 노동 영역이었다. 총 130건 중에서 51건이 환수 대상이었으며, 총액은 107억 3,400만원 수준이었다. 최대 환수액은 44억 4,400만원이었고, 132만6,000원 수준이었다. 세 번째는 농림 영역이었는데 총액은 21억1,000만원이었다. 농림 영역의 최대 환수액은 20억 9,700만원이었고, 최소 환수액은 46만3,000원이었다. 네 번째는 건설교통 영역으로서 총액은 11억3,300만원이었다. 최대 환수액은 7억 6,300만원이었고, 최소 환수액은 294만7,000원이었다.

억대가 넘어선 영역은 산업자원 8억200만원, 문화관광 5억9,700만원, 여성가족 영역이 1억7,600만원이었다. 교육, 보훈, 행정자치 영역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표 4-14> 복지비·보조금 환수 결정액(단위: 1,000)

영역	총 건수	환수 건수	환수총액	환수평균	최소값	최대값
건설교통	35	5	1,133,019	226603	2,947	763,509
교육	10	3	22,799	7599	6,000	10,077
노동	130	51	10,734,708	210484	1,326	4,444,279
농림	50	5	2,110,635	422127	463	2,097,000
문화관광	23	7	599,705	85672	148	463,000
보건복지	557	170	43,331,854	254893	80	20,089,522
보훈	9	1	25,159	25159	-	25,159
산업자원	89	7	802,391	114627	880	300,311
여성청소년	10	4	176,481	44120	1,452	122,100
행정자치	7	1	4,724	4724	-	4,724
해양수산	5	0	-	-	-	-
재정경제	2	0	-	-	-	-
국방	1	0	-	-	-	-
전체	928	254	58,941,475	1,396,008	13,296	28,319,681

보건복지 영역 중에서 환수총액이 가장 많은 분야는 건강보험 분야였다. 건강보험 부정수급 117건 중에서 26건의 환수 결정이 있었고, 환수 총액은 397억3,500만원이었다. 최대 환수 액은 200억8,900만원이었고, 최소 환수 액은 800만원이었다.

취약계층 복지비와 기초생활 복지비의 부정수급이 뒤를 이었는데 각각 총액은 16억700만원과 11억4,000만원이었다. 취약계층의 최대 환수 액은 4억5,900만원이었고, 최소 환수 액은 8만원이었다. 기초생활 분야의 최대 환수 액은 7,300만원이었고, 최소 환수 액은 47만 5,000원이었다.

<표 4-15> 보건복지 영역의 분야별 환수금액

보건복지	총 건수	환수 건수	환수총액	환수평균	최소값	최대값
건강보험	117	26	39,734,948	1,528,267	800	20,089,522
고용보험	4	2	24,888	12,444	9,971	14,917
기초생활	173	73	1,140,121	15,618	475	73,811
보육	96	24	678,774	28,282	919	228,678
여성가족	12	4	97,334	24,333	1,136	85,990
주택	9	3	48,707	16,235	12,725	18,726
취약계층	144	38	1,607,081	42,291	80	459,180
식품위생	2	-	-	-	-	-
전체	557	170	43,331,853	1,667,470	26,106	20,970,824

고용노동 영역에서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전체 69건 중에서 29건 으로부터 환수가 있었다. 환수 총액은 78억 500만원이었다. 이 분야의 최대 환수 액은 44억4,400만원이었고, 최소 환수 액은 132만 6,000원이었다. 산재 분야의 환수총액은 18억2,200만원이었다. 이 분야에서 최대 환수 액은 17억930만원이었고, 최소 환수 액은 1억 1,200만원이었다.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뚜렷이 나지 않았다. 노동 분야의 환수총액은 11억 700만원이었다. 최대 환수 액은 5억 6,600만원이었고, 최소 환수 액은 328만원이었다.

<표 4-16> 고용노동 영역의 분야별 환수액

소분류	총 건수	환수 건수	환수총액	환수평균	최소값	최대값
고용보험	69	29	7,805,204	269,144	1,326	4,444,279
노동	49	20	1,107,409	55,370	3,282	566,324
산재보험	7	2	1,822,095	911,047	112,776	1,709,319
노동행정	5	-	-	-	-	-
전체	130	51	10,734,708	1,235,561	117,384	6,719,922

제5장 기관 간 연계, 정보시스템 공유 및 활용내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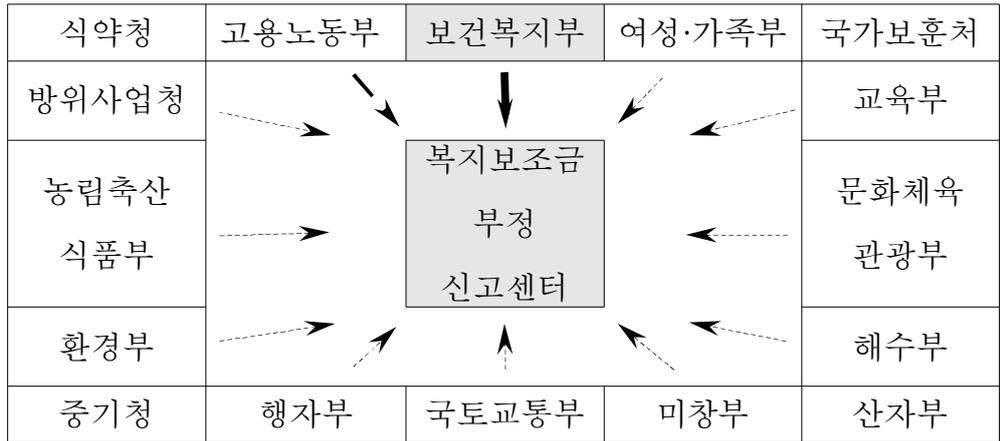
1. 기관 간 연계 및 정보공유 시스템 부재에 따른 문제분석

「신고센터」는 현재 타 기관 간 부정수급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이 미비되어있다. 「신고센터」가 복지비와 보조금의 부정수급 신고 처리의 중심 조직이지만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처 홈페이지에는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여 처리해 달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지 않고 있었고, 「신고센터」에 신고하라는 안내를 하는 부처조차도 거의 없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하여 17개 부, 국민안전처를 비롯한 5개 처, 그리고 16개 청 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위원회 조직, 감사원과 국가정보원 등의 중앙행정기관이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 외에는 부정수급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더불어 「신고센터」에 연계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기관은 없었다. 「신고센터」의 허브 기능이 취약하다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림 5-1>과 같이 도식화하여 설명할 경우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비교적 상세한 안내 정도는 하고 있었지만 「신고센터」와의 연계 관련 언급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부정수급 처리를 위한 허브 조직으로서 「신고센터」의 역할 수행의 큰 허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림 5-1> 신고센터와의 연계 관계 분석



연계관계 유: ➡; 연계관계 일정부분 존재: ➡➡; 연계관계 무: ➡➡➡

「신고센터」도 신고→접수→심사→조사→결과보고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이 과정에 해당되는 정보를 자료관리 수준에서 관리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신고센터」의 부정수급 관리 정보시스템 미비와 기관 간 부정수급 정보 연계시스템 미비로 선제적 예방적 관리가 가능한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사례 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기평)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연구비 부정사용 등으로 문제가 된 과제가 전년보다 3배 이상 늘었다. 박정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산기평에서 201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지원과제 대비 문제과제 비율은 2011년 2.2%, 2012년 1.9%, 2013년 2.8%, 2014년 1.1%, 2015년 3.2%였다. 환수금액은 2011년 25억 원에서 2015년 216억 원으로 8.6배 증가했다. 문제과제의 유형은 연

구비 부정사용이 139건(60.7%)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수행결과 불량 50건(21.7%), 협약 위배 31건(13.5%), 과제수행 포기 7건(3.1%), 연구 부정행위 2건(0.9%)이었다. 이 가운데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 건수는 2011년과 2012년 19건, 2013년 38건, 2014년 11건, 2015년 45건, 2016년(1~6월) 7건이었다. 연구비 부정사용을 산기평이 내부적발 한 건수는 57건,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이 적발한 건수는 82건이었다(YTN 2016/10/13).

<사례 2>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지난 5년 동안 7만 개가 넘는 과제에 대해 8조8,600억 원 규모의 국가 연구비를 지급했는데 이중 일부만 가지고 점검한 결과 5건 중 1건이 연구비 부정사용 사례로 파악되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지난 5년 동안 지원한 과제는 모두 7만 3천여 건, 연구비는 8조 8천6백억 원이 지급되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정밀정산 현장점검이 진행된 과제 수는 고작 4천여 건으로 전체의 5%였다. 이 가운데 무려 8백 개 가까운 사업이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적발되었다(YTN 뉴스 2016/10/01).

<사례 3> 울산의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한 명은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일한 것처럼 위장해 울산고동노동지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해 360만원을 타냈다.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다. 나머지 26명도 비슷한 방법으로 1인당 적게는 18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총 1억 원 가량을 부정수급했다. 공사현장소장 등은 근무자 수를 부풀려 회사로부터 현장 유지비를 많이 타내려고 이들이 일한 것처럼 일용노무비 대장을 작성하는 수법을 활용했다(서울신문 2016/11/03).

<사례 4> 유치원 운영자들이 교사 인건비를 빼돌리고 원생들 식자재 구입가격을 부풀린 뒤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국고 보조금 등 1억 원 상당을 챙긴 사건이 부산의 영도경찰서에 적발됐다. 성인교사를 포함한 25인분의 식사로 닭 2마리를 제공하는 등 저질 식단으로 원생들의 끼니를 때우게 했고, 하지도 않은 수업에 대한 수업비를 학모들로부터 받았고, 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국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 이 유치원에서는 2015년 2월부터 1년 동안 있지도 않은 방과 후 야간 돌봄교사 11명이 근무한 것처럼 청구하여 국고보조금 빼돌렸는데 유치원에 일하는 교사들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도받아 교육청으로부터 입금된 인건비를 인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노컷뉴스 2016/11/04).

<사례 1>과 <사례 2>는 연구개발 관련 국고보조금 부정사용이고, <사례 3>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 부정수급이며, <사례 4>는 유치원 운영 부정수급이다. 귀속 기관도 달라 <사례 1>은 산자부, <사례 2>는 교육부, <사례 3>은 고용노동부, 사례 4는 보건복지부이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부정수급이 다양한 기관에서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신고센터」는 외부의 신고에 의해서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소극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다.

다양한 유형의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는 사건처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부처와의 연계시스템과 정보관리 시스템이 없다. 따라서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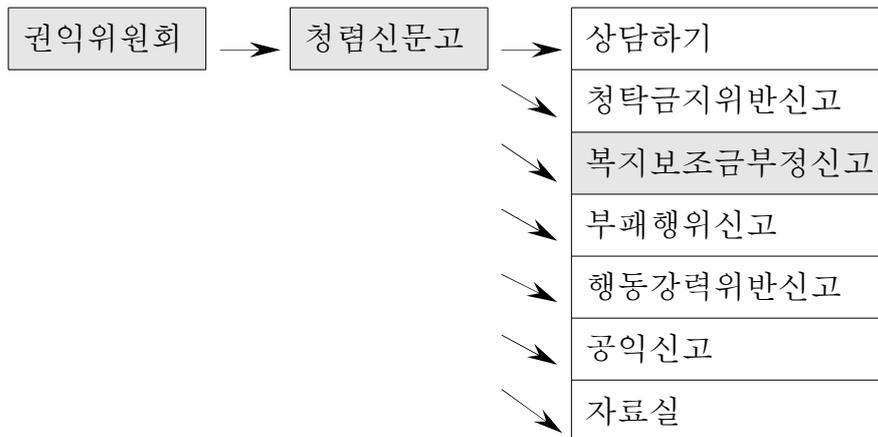
고사건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2. 유관기관 정보시스템과 연계 가능성 분석 결과

1)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의 접근 가능성 분석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는 부정수급 신고의 중심센터로서 미약하다. 권익위의 소속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의 홈페이지를 열어도 「신고센터」가 바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권익위 홈페이지에서 청렴신문고를 클릭해서 들어가야 「신고센터」에 접속이 가능하다. 「신고센터」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찾아가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그림 5-2>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접속 방법



청렴신문고를 알면 바로 청렴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신고센터」에 접속할 수 있지만 이 사이트 역시 일반인에게 잘 알려져 있

지 않다. 더군다나 청렴신문고 아래에 「신고센터」가 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고센터」에서 부정수급 신고자료, 확인자료, 사후처리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고 전제할 때 신고사건 처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개별 기관과 부정수급 정보의 연계 활용이 가능하다. 연계활용이 가능한 대상기관을 탐색한 결과 복지 분야와 보조금 분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었다. 복지 분야와 보조금 분야로 나누어 현재 상황을 분석하였다.

1) 복지 분야

복지 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사업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정보, 어린이집보육료 지원, 수급자 정보, 장애인복지 수급자 정보 등을 중심으로 “복지로의 부정수급 신고사이트<<https://www.bokjiro.go.kr>>”를 통하여 부정수급 신고처리를 타 부처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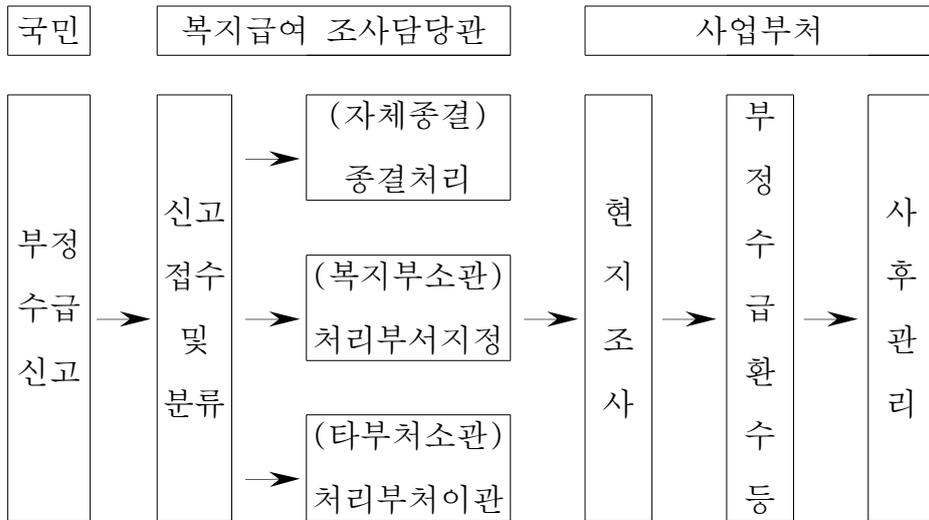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 사이트”에서는 신고방법으로 온라인, 우편, 방문, 전화 상담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보건복지부 주관사업 이외의 신고는 권익위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함으로써 「신고센터」가 부정수급 처리과정에서 일종의 “허브 조직”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비 부정수급 신고 처리 절차를 6단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그림5-3>과 같이 부정수급 신고가 일반 국민들로부터

터 들어오면 복지급여 조사담당관이 신고 사항을 분류하여 자체 종결 사항, 복지부 소관 처리부서 지정, 타 소관부처 이첩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결정한다.

복지부 소관이라는 결정이 난 경우 처리 부서를 지정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처리부서가 지정되면 해당 부서에서는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부정수급액이 확정되면 환수 절차를 밟는다. 환수조치에 관련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르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림 5-3> 보건복지부의 부정수급 처리과정



보건복지부는 부정수급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 사이트”에서 신고유형에 따른 지급액 및 상한액을 <표 5-1>에서와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신고포상금의 지급근거는 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법과 기재부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로 나누어져 있다.

<표5-1> 하단부에 제시된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및 수당,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부정수급에 관한 기재부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며, 나머지는 복지부가 관리하는 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 담당기관은 신고유형의 사안에 따라 보건복지부만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포함되어 있다. 포상금의 상한액은 불법의료행위 신고포상 50만원에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 10억 원까지 다양하게 정해져 있다.

<표 5-1> 보건복지부의 부정수급 신고유형 및 신고포상

신고유형	지급근거	지급액 및 상한액	담당부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포상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 및 포상금 지급지침	환수금액의 40% /1백만원	복지부 사회서비스 정책과
어린이집 신고포상 (부정수급, 아동학대, 급간식 부정)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환수금액 30%~10% /5천만원	복지부 보육기반과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일반인 5백만, 내부 종사자 200백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조사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및 시행령 제75조	일반인 5백만원, 내부종사자 10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1부
의료급여 신고포상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4]	관련자 5백만원 이용자 3백만원	기초의료보장과
불법의료행위 신고포상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벌금액의 100분의20이상 /50만원	복지부 의료지원정책과
의약분업 신고포상	약사법 제90조	신고 벌금액 100분의10/5백만	복지부 약무정책과
기초생활보장급여 신고포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시행령 제18조, 복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규정	환수금액의 30% /5천만 원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신고포상	상동	환수금액의 30% /5천만원	복지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수당 신고포상	상동	환수금액의 30% /5천만원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사회복지법인·시설 및 단체 신고포상	상동	환수금액의 30% /5천만원	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고용노동부는 보건복지부처럼 적극적으로 부정수급 신고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의 자격정보, 고용안정사업 관리, 그리고 실업급여 제공 등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익위의 「신고센터」와 연계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의 보조금 또는 복지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과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두 영역으로 나누어 부정수급을 처리한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을 부정수급과 지급제한이 완화되는 부정수급 등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를 의미하며 지급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는 경미한 수준의 부정수급을 의미한다.

고용노동부는 <그림5-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예방활동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실업급여 담당직원은 이 직확인서 처리, 수급자격 인정, 실업인정, 그 밖에 실업급여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정수급 예방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실업급여 지급을 지연시키거나 정당한 수급자격자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자동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고용보험전산망에 구축된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사전·사후 알림 장치를 의미한다. 또한 매년 5월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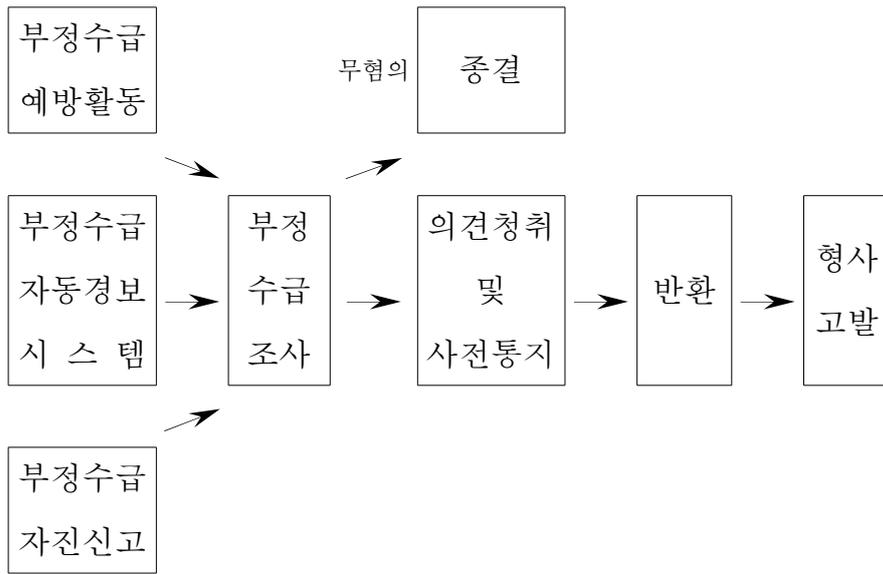
10월에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수급자가 자발적으로 부정수급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부정수급이 그래도 발생하면 부정수급 조사를 실시하는데 고용노동부의 부정수급 조사팀에서 임명된 조사관은 신고, 제보, 이첩 등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부정수급 의심 사건을 처리한다. 조사 과정에서는 이직확인서 및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 위조나 거짓 기재 등이 세심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 조사관은 사업주 및 수급자격자 등을 직접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의뢰하여 조사할 수도 있다.

부정수급 혐의가 없으면 조사관은 사건을 종결짓고,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조사관은 당사자의 의견청취 과정을 거친다. 당사자의 의견청취는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의미가 있고, 그 후에는 사전 통지를 함으로써 반환 절차에 들어간다.

부정수급액은 반환하여야 하며, 부정수급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부정수급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는 연대책임을 진다.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하고, 거짓된 신고, 보고, 또는 증명을 한 사업주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 부정수급 과정에서 반환에 불복한 경우에는 형사고발 조치도 취할 수 있다.

<그림 5-4>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리과정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부정수급과는 별도의 규정으로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행위를 의미한다. 아래의 <그림5-5>에서와 같이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에 관한 예방활동은 있지만 실업급여처럼 자동경보시스템 운영이나 부정수급 자진신고 활동은 제도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부정수급 의심사례가 포착되거나 발생 신고가 들어오면 지방고용관서의 담당직원은 조사활동을 실시한다. 그러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서처럼 별도의 조사관을 임명하여 조사활동을 실시하지는 않는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반환명령을 한다. 반환금액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그러나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리과정에서처럼

불복할 경우 형사고발 조치와 같은 내용은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림 5-5>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처리과정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외에도 부정수급 처리와 연계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아래의 <표5-2>의 내용과 같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행복e음 수급자 정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정보 등과 연계되어야 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정보 및 요양급여 정보, 국민연금 공단의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의 4대 보험 가입 이력 등의 정보와 연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기관들과의 특별한 연계장치의 존재는 확인할 수 없었다.

<표 5-2> 복지 분야 연계 및 활용 가능 대상 기관

분야	기관	대상정보	비고
복지 분야	법무부	출입국 정보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기초연금수급자 정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수급자 정보, 장애인복지 수급자 정보	
	보건복지부	행복e음 수급자 정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정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자격정보(실업급여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정보, 요양급여 정보	
	국민연금공단 (4대 보험정보연계센터)	4대 보험 가입 이력	

2) 보조금 분야

복지비뿐만 아니라 보조금의 부정수급도 심각한 예산 누수의 한 유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 보조금 관리 부처에서도 부정수급 처리를 위한 규정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을 두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5-6>에서와 같이 보조사업자 선정관리 단계에서부터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사업관리체계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공모로 사업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민간위원을 포함한 보조사업자 선정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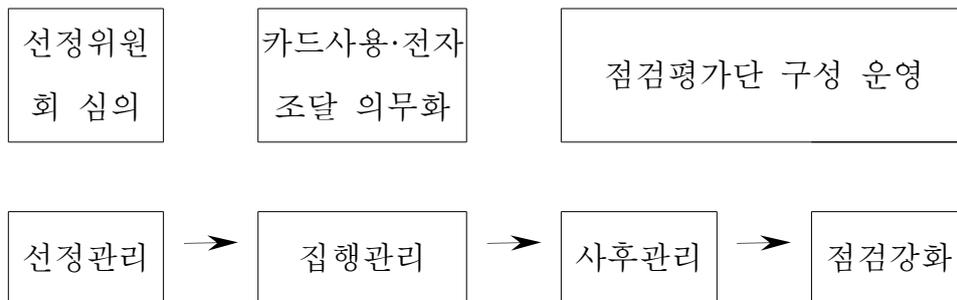
회의 심의를 거친다.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사용하는 집행단계에서는 직접 계좌이체 또는 카드 사용을 의미화하고, 구매 계약 시에는 전자조달 이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보조사업이 끝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정책기획관을 단장으로 점검평가단을 구성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점검계획을 수립한 후 점검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수급 의심사례가 있으면 적발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관리체계는 부정수급에 집중되어 있다기보다는 보조금 사업을 관리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 집중관리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5-6> 국토교통부의 보조사업 관리과정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부정수급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처럼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규

정 제정 이유를 “국고보조사업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집행관리·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선정기준 관리, 집행관리, 사후관리 방안을 간단하게 제시하는 수준이었다.

보조사업자 선정관리의 하나로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거나,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사업타당성 및 사업관리체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단계를 두고 있다. 총사업비 및 중기사업계획서의 보조금이 100억 이상인 경우 적격성 심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동일인에게 2회 이상 지원 시, 수행실적 평가 및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원칙적으로 최대 3회까지만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집행관리 방안으로서 계좌이체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한 집행만을 인정하고, 별도계정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는 등 3억 원 이상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의 외부기관 검토를 의무화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후관리 방안으로서 부동산 소유권 등기 시 부기등기를 하도록 하고, 미래부 장관의 승인 없는 처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미래창조부는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보조사업 점검계획 수립 및 현장 점검 실시, 부정수급 관련 제재·포상 등의 심의를 위해 부내에 부정수급 심의위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는 방향 정도 제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권익위의 신고센터와 연계하여 부정수급 문제를 처리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중기청의 경우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련 정부출연금의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여 중기청이 아니라, 경찰청의 기획수사로 형사

처벌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중기청에서 활용하는 부정수급 처리 활동은 현장점검, 적발 시 제재조치, 그리고 부정수급 경각심 고취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현장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정수급 의심기관에 대한 점검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강화하고, 자금집행 현황을 불시 점검하는 암행점검단을 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부정수급 의심기관에 대한 점검기간을 기존에는 6개월로 정하고 있었으나, 2개월로 단축하고 경찰청과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의 「신고센터」와의 협조강화와 같은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둘째, 현장점검을 통하여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보조금 사업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중대한 사안인 경우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제재부가금 제도를 수립하여 처벌수위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도입하였다. 끝으로 부정수급에 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클린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사용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방안도 도입하였다.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중기청 외 보조금 분야 연계 및 활용 가능한 대상기관으로는 아래의 <표 5-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개발정책과, 교육부의 한국연구재단,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토교통부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내역 정보 등이다. 업무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연계를 활성화해야 「신고센터」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표 5-3> 보조금 분야 연계 및 활용 가능 대상 기관

분야	기관	대상정보	비고
보조금 분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리원, 한국 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정산정보(실시간통합 연구비관리시스템, RCMS)	금융권(은행, 카드사)과 연계하여 연구비 사용내역을 실시간 검증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과)	연구개발사업 관련정보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연구개발사업, 인력장비, 성과 등 정보 제공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자 정보 및 연구사업 정보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 보진흥원)	연구개발사업 관련 정보(중소기업청기술개 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SMTECH)	중소기업청의 기술개발 관련 업무를 총괄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유가보조내역 정보(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	

산업통상자원부의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은 연구 수행기관
과 전담기관의 연구비관리, 연구비복원, 연구비정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연구비 전담기관에서는 계좌조회, 입출관
리, 입출금등록, 요청내역관리, 계좌관리, 계정관리 등이 가능하다.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가 전자적으로 이 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하면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비 부정수급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 사전 예방, 사후 처리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5-4>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RCMS

수행 기관	연구비관리	현황조회, 연구비사용관리, 인건비/직접지급관리, 현물등록관리, 현장실태조사관리, 인계관리
	연구비복원	요청내역조회, 연구비이체취소요청, 카드결제복원요청, 부가세복원요청
	온라인정산	연구비사용증빙관리, 카드내역조회, 정산서류작성, 과제별 상시점검
	이용환경관리	기본설정, 부가설정, 기관계좌관리, 이자관리
전담 기관	RCMS 업무포털	나의과제관리, 사업별 현황조회
	연구비관리	현황조회, 관리, 전담기관연계, 수기관리, 전담기관연계정보
	온라인정산관리	과제별 상시점검, 과제별 정산관리, 회계기관권한관리
	연구비분석	RCMS 관리현황, 집행 분석, 동향분석
	자금관리	계좌조회, 입출관리, 입출금등록, 요청내역관리, 계좌관리, 계정관리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는 국가R&D사업관리, 국가R&D성과 정보, R&D데이터개방, 국가R&D참여인력, 연구생태계 맵, 국가연구 시설장비 관리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R&D 관련 부정수급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시스템과 연계활용이 가능하면 R&D 부정수급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가능하다.

<표 5-5>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NTIS

일반 이용자	국가R&D사업관리, 국가R&D성과정보, R&D데이터개방, 국가R&D참여인력, 연구생태계 맵, 국가연구시설 장비관리, 이슈로보는 R&D
대학/ 출연	오픈사이언스 랩, 연구생태계 맵, 세부과제, R&D광고, 유사과제, 시설장비 제품, 시설장비 등록, 과학기술인 등록, 성과검색, 성과검증지원, 기술수준현황, NTIS 클라우드, 이슈로보는 R&D
기업	맞춤정보, 글로벌 기술정보분석, R&D광고, 유사과제, 성과검색, 과학기술인 등록, 주사분석통계, 참여인력정보, 이력정보수정, 시설장비 등록, 이슈로보는 R&D, 연구생태계 맵
부처/ 과제관 리기관	R&D광고, 세부사업, 법령정보, 유사과제, 제재정보, 시설장비 제품, 시설장비 통계, 국가R&D사업성과평가정보공개, 평가위원회후보추천, 성과검증지원, SIMS, 연구생태계 맵, 이슈로보는 R&D, R&D데이터개방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SMTECH)은 중소기업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과제신청, 전자평가 발표자료 등록, 과제평가, 연구 장비 사업관리, 전자협약, 보고서제출, 연구노트, 성과입력, 제재 조치, 온라인수요조사 등의 정보를 근거로 온라인으로 과제관리를 하는 시스템이다. 연구비 집행과 연구비 정산을 온라인으로 실시하도록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과 연계되면 중소기업 기술 분야의 R&D 부정수급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표 5-6>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SMTECH)

온라인 과제 관리	과제신청, 전자평가 발표자료 등록, 과제평가, 연구 장비 사업관리, 전자협약, 보고서제출, 연구노트, 성과입력, 제재조치, 온라인수요조사
연구비 집행	현황조회, 집행관리, 바우처 관리, 카드관리, 사업비정산
온라인 정산	사업비환원, 납부현황, 온라인정산, 회계법인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화물차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는 유류구매카드로 기름 값을 결제하면 카드사는 화물차 기사에게 유가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청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화물차주를 대신해 나머지 몫을 카드사에 지급하는 구조로 시행된다.

부정수급 가담자는 화물차 운전기사와 주유소 양측의 공모 가능성이 높다. 주유소는 우량고객인 대형 화물차주들을 유치해 매출을 늘릴 목적으로 주유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화물차 기사들과 짜고 유류구매카드로 허위 결제한 다음 현금을 돌려주거나,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20~30% 부풀려 결제한 후 차액을 돌려주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한 유가보조금 관련 정보를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서 통합관리 할 경우 이 시스템이 향후 구축될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의 부정수급 정보관리 시스템에 연계 활용할 수 있다.

3.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1) 설치근거와 연혁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일명 e-나라도움)은 2017년 1월 1일 조기 개통, 그리고 같은 해 7월 1일 개통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국가재정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3항에 따른 공개대상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의 범위를 설정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에 따른 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에 관한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2015년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시한 후 10월 1일 추진단을 설치하였다. 같은 해 11월 11일 이 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과 ISP를 완료한 후 2016년 2월 29일 시스템 구축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3월 25일 시스템 구축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후 현재 시스템 구축 작업이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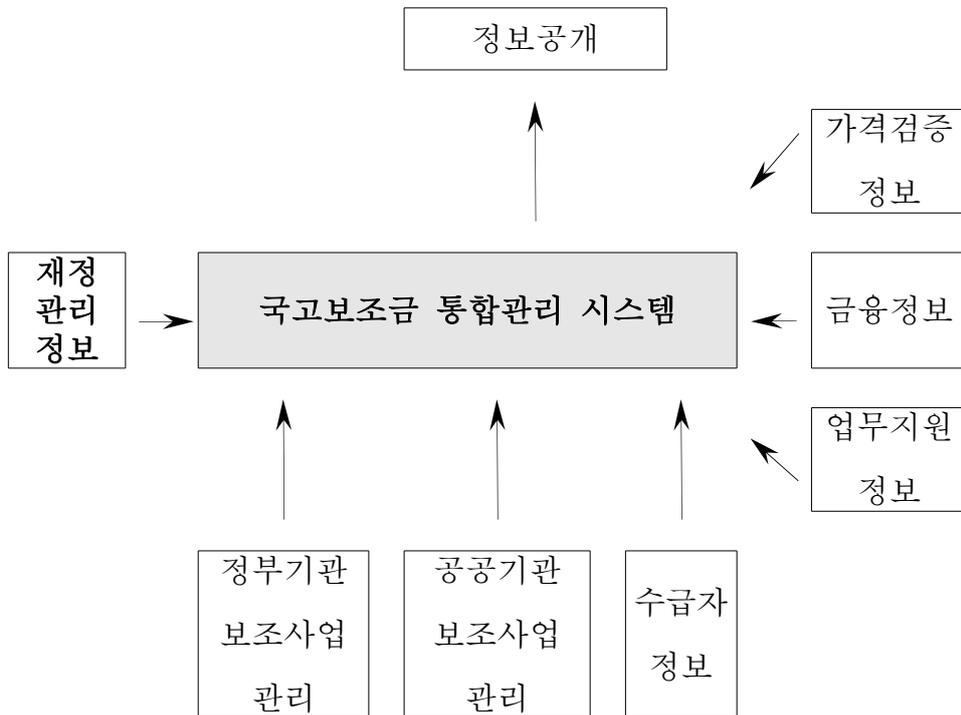
2)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의미와 통합연계 구조도

이 시스템은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집행·정산 등의 보조금 처리 순 과정을 통합·관리함으로써 빈발하고 있는 보조금 부정 및 중복수급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세금 낭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표준화·전산화·온라인화 등을 통해 복잡한 보조금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시스템으로 국고보조금의 쏠 처리과정을 통합·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의 중복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업무의 효율화를 추진하며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 구현을 위하여 55개 중앙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 총 560여 개 기관 정보를 연계 작업을 하고 있다. 통합연계시스템 구조도는 다음 <그림 5-7>과 같다.

<그림 5-7> 통합연계시스템 구조도



재정관리정보에는 dBrain, e-호조, 에듀파인 등이 있고, 정부기

관 보조사업관리에는 행복e음, AGRIX, CLEAN 등이 있으며, 공공기관보조사업관리에는 교통안전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연구재단, 대한체육회 등이 있다. 수급자 정보에는 행복e음, AGRIX, 전자바우처, 보육통합정보 등의 수급자 정보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다.

자격검증 정보에는 대법원, 국세청,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얻은 정보가 포함되며 이 정보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되며, 금융정보에는 금융결제원, 시중은행, 신용카드사 등에서 얻은 정보가 포함되며 이 정보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다. 업무지원정보에는 전자결제, 전자계약, 가격정보, 기준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중복·부정수급 방지기능

현재 국고보조금 관리는 부처 칸막이가 쳐져 있는 상황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중복·부정수급 파악이 불가능하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은 국고보조금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업무 단계별로 상시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보조사업자의 선정→집행→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중복·수급을 방지하는 기능을 구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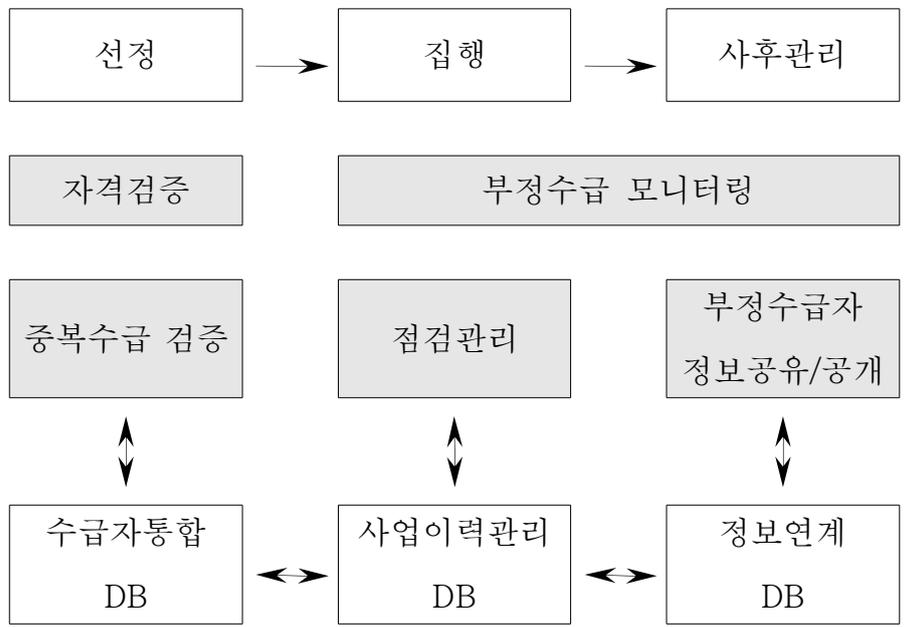
<그림5-8>과 같이 선정단계에서는 수급자통합 DB를 활용하여 수급자의 자격검증을 실시함으로써 보조금 신청자 중에서 비수급자를 걸러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이력관리 및 수급자 통합관

리를 실시함으로써 중복수급자를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집행단계에서는 보조금의 실시간집행관리(RGMS)를 통해 무단 인출 중 지출 관련 부정사례를 근원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보조금 사업의 부정수급 징후를 감지하는 모니터링 기능을 활용하여 부정 수급을 탐지한다.

사후관리단계에서는 수급자통합 DB에서 중복수급자를 추출하여 부정한 중복수급 여부를 검증하고, 부정수급자 정보공개 및 부정 수급 신고채널을 마련하여 일반국민의 감시를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5-8> 업무단계별 상시 모니터링 구조



a. 자격검증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은 개인이나 법인이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수급자격에 대한 검증 정보를 연계하여 비자격자가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갖춘다.

사전 등록된 수급자 및 제외대상 항목에 대하여 온라인 연계검증과 오프라인 수기검증을 실시한다. 급여형 보조사업의 경우 복지부의 행복e음, 농림부의 Agrix 등 자체검증시스템을 통하여 자격검증을 실시한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는 자격검증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이 가능하다.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는 자격검증 단계에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경우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한 선제적·예방적 차원의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서 자격검증을 온라인 연계검증과 오프라인 수기검증을 병행하기 때문에 부정수급을 위한 허위증빙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신고센터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b. 중복수급검증

중복수급검증은 동일사업 내의 자격검증과 달리 전 부처의 모든 보조사업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중복성을 검토하는 하위시스템이다. 담당자는 수급자통합 DB와 이력관리 DB를 포함하고 있는 집행정보 DB에 접속하여 시스템적으로 중복수급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중복수급 관련 자료는 보조사업 신청 시 담당자가 수급자 이력

및 상세 사업정보를 조회하고 다른 보조사업 신청이 있는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보조사업 수행 후, 2개 이상 사업을 수행하거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급자를 통합DB에서 추출하여 중복수급 여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는 중복수급검증 시스템에 연계할 경우 선제적·예방적 차원의 중복수급여부를 적발하여 조사할 수 있고, 보조사업 수행 후에도 적발 기회가 있어 신고센터의 기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c. 부정수급 모니터링

부정수급 모니터링은 보조금 사업자, 보조금 수급자, 거래처에 대하여 부정수급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종합분석을 실시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사업의 경우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 등 집중관리를 통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하위 시스템이다. 이 모니터링은 부정수급에 대한 사전 감지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예방적 차원의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은 모니터링을 통하여 부정수급을 감지하기 위해 보조사업 과거 부정사례, 현재 보조금 집행상황, 그리고 향후 보조사업 수행가능성 등에 대하여 과학적 분석을 실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과학적 분석방법은 연관분석(association score, AS), 행동분석(behavior score), 신용분석(credit score), 그리고 경험분석(experience score, ES)를 기초로 점수화 하는 접근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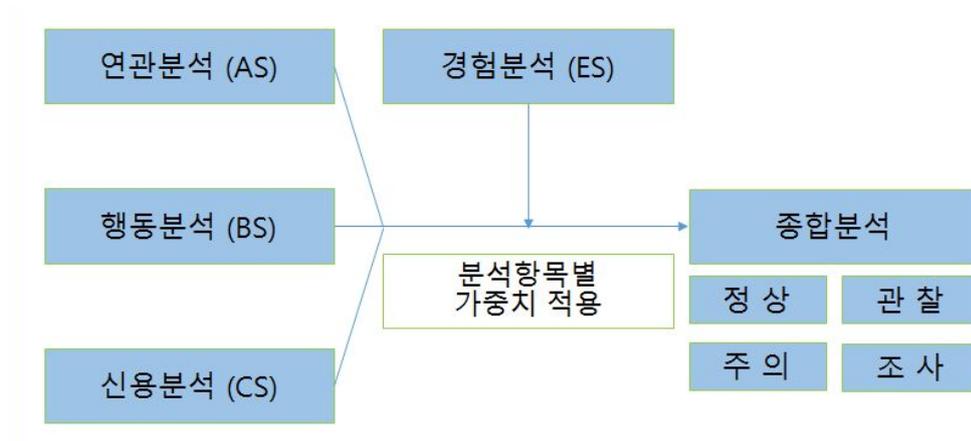
연관분석은 과거에 발생한 부정수급 사례에 근거한 부정수급

시나리오에 해당되는 정도를 평가하여 점수화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행동분석은 보조사업 수행 중 통상적 범위를 벗어나는 이행행동 패턴을 평가하여 점수화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신용분석은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보조사업자의 환경적 요인을 평가하여 점수화 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경험분석은 과거 보조사업 수행이력과 평가결과 등을 분석하여 종합분석 시 가중치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네 가지 분석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과의 내부연계가 필수적이지만 신용평가기관, 대법원, 국세청, 조달청, 그리고 행복e음과 같은 외부연계 정보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과 원활하게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그림 5-9>에서처럼 상기 네 가지 분석 결과를 근거로 종합분석이 마무리되면 그 결과는 정상, 주의, 관찰, 조사와 같은 네 가지 방식의 결과가 자동적으로 도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림 5-9> 부정수급 모니터링 과정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는 중복수급 검증 시스템에 연계할 경우 선제적·예방적 차원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사전 감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감지기능을 기초로 부정수급 발생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가능하다.

d. 점검관리/정보공개

점검관리/정보공개는 부정수급으로 확정된 수급자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정보공개 및 부정수급 의심사례 신고채널을 개설하여 대국민 감시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 하위시스템을 통하여 부정수급 신고 및 조사중인 의심사례 정보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보조사업 담당자는 선정단계부터 참고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는 점검관리/정보공개에 연계함으로써 부정수급 의심사례에 대한 자동신고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예컨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급자의 여러 가지 정보 조합에 의한 패턴이 분석되면 유형별, 세부 내용별로 그 정보를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로 보내주면 제도 개선 자료로 참고할 수 있다. 사안이 상당히 구체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신고형태로 전달되어 센터 조사관의 확인, 조사 과정을 거쳐 정식 이첩 사건으로 처리하는 등 「신고센터」의 조사기능 수행에 적극적 활용이 가능하다.

「신고센터」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중에서 점검관리/정보공개 하위시스템에 우선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다른 기능의 연계를 위한 준비 작업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6장 중장기 발전방안 제시

1. 「신고센터」의 명칭에 대한 제안

현행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는 전 부처의 복지비와 보조금의 부정수급의 신고를 받고 처리하는 허브조직 대명사로서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복지·보조금”은 복지비와 보조금을 포함하는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복지 분야의 보조금으로 오해할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고센터」의 조직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기능에 부합하는 「신고센터」의 명칭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의 연구내용과 전문가 세미나 자료를 활용하여 <표 6-1>에서처럼 네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명칭은 조직의 기능과 업무처리 수준에 부합되어야하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명칭 변경의 최종 대안을 선택하여야 한다.

<표 6-1> 「신고센터」의 명칭 변경 대안

대안	장점	단점
제1안: 복지비·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현행 명칭처럼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 센터라는 오해 불식	전 부처의 복지비와 보조금 부정 신고 처 리를 하는 허브 조직 의 의미 미흡
제2안: 복지비·보조금 부정 통합신고센터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 센터라는 오해 불식; 복지비와 보조금 부정신고 처리 허브 조직이란 의미 확보	보건복지부처럼 복지 비 부정수급 신고처리 를 적극적으로 하는 부처뿐 아니라 그 외 부처의 반발 가능
제3안: 보조금·복지부정 신고처리 단	명칭이 간략하고, 보조금과 복지비 모두를 포함하는 명칭, “~단”에서 조직 격 상 이미지 확보	조직 확대에 대해 행 자부의 업무협조 필요
제4안: 공공재정 부정 신고처리 단	명칭이 간략하여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 가능; “~단”에서 조직 격상 이 미지 확보	조직 확대에 대해 행 자부의 업무협조 필요; “공공재정”용어에서 기재부 이미지 포함

제1안과 제2안을 비교하면 모두 「신고센터」의 기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명칭이라고 판단된다. 「신고센터」는 다양한 부처 및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이 명칭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나 통합 또는 허브조직으로서 기능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이 「신고센터」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신고센터」란 신고를 접수하는 조직으로만 인식되고

있다는 점도 「신고센터」라는 명칭을 유지할 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현재 사실상 접수기능은 권익위내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실질적으로 「신고센터」는 조사·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미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도 현행 명칭을 유지할 때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제3안과 제4안중에서는 제4안이 간결하고 「신고센터」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명칭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공공재정”용어에서 기재부 이미지가 강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으나, 현재 권익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과 연관하여 볼 때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4안의 경우 부정수급에서 복지비 부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데 이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할 수 있다.

2.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의 업무처리 단계에서의 발전방안

「신고센터」의 부정수급 처리과정에 대한 분석 결과 신고단계, 접수단계 및 이첩송부 단계, 그리고 수사조사 단계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문제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표 6-2>와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신고단계에서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상태인 경우에 제보자로부터 신고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같은 접근법은 소극적·수동적 접근법이다. 복지비·보조금 관련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례교

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지만 선제적·예방적 수준의 부정수급 감지시스템이 부재 상태이다.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부정수급 감지시스템 구축 및 활용이 필요하다. 부정수급 사례를 알아도 신고센터를 모르면 그냥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신고센터」 알리기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 부정수급 신고는 대부분이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신고 소스의 다양성이 전제가 되어야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유형의 부정수급 사례가 제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고 외 부분에서 다양한 외부기관의 데이터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시스템 구축이 부재 상태였다. 따라서 신고 전에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방안이 부재 상태라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시할 수 있다.

둘째, 부정수급 신고의 접수단계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접수 여부를 결정해야 할 뿐 아니라, 이 어느 누구든 수용할 수 있는 과정상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데 신고 후에 어떤 절차를 거쳐 접수를 결정하는지에 대한 공식적 절차가 부재한 상태여서 이의 보완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현재는 신고자의 신고내용을 어떠한 기준으로 접수가 되고 종결되는지는 접수 담당자의 경험적 정보능력, 부정수급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능력 등의 주관적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우려가 있다. 물론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객관성 제고를 위해 접수 인력의 전문성이 담보되는 절차적 담보장치가 필요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접수 매뉴얼 등의 틀은 필요하다.

특히 「신고센터」는 정부협업조직이라는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정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력만이 국민권익위원회 인력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외부에서 파견되어 온 인력이기 때문에 부정수급 처리과정 상 안정적 관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신고센터의 고유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셋째, 조사·수사단계에서 조사·수사를 행하는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는 유지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명시적 역할 관계에 대한 내용은 보이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조사 및 수사의 중간 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과 활용이 필요하다. 해당기관에서는 환수 등 후속조치를 하는데 이를 모니터링하는 공식 시스템 개발도 필요하다.

<표 6-2> 부정수급 처리과정에서의 발전방안

신고자	→ 권익위	→ 권익위	→ 외부 기관	→ 외부 기관	→ 권익위
신고	→ 접수	→ 이첩·송부	→ 조사·수사	→ 결과 통보	→ 결과 통보
부정 예방 감지 시스템/ 신고센터 홍보활동 /선제적 대응방안 /신고소스의 다양화	전문 인력 충원 필요/신고 후 체계적 관리절차 구축/신고센터 고유인력 확충		외부 조사 기관 공동으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개발 및 활용		환수등 후속 조치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필요

3.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의 조직발전 방안

1) 「신고센터」의 조직에 관한 발전방안

「신고센터」는 권익위 인력 9명, 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인력 8명, 경찰 1명, 그리고 6개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인력 6명으로 구성

된 정부협업 조직으로 16개 기관에서 파견된 24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력을 파견한 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건보심평원 등 3개 기관으로 가장 많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LH는 국토교통부, 장학재단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교육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는 부처 차원에서도 공무원을 신고센터에 파견하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이중 삼중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600개가 넘는 공공기관이 있는데 어느 정도 대표성도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나누고 공기업은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그리고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신고센터에서 파견을 받을 경우 유형별로 1~2명씩 받아 해당 유형의 공공기관의 부정수급 문제를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를 집중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파견 인력이 필요하며, 모든 부처에서 파견 인력을 이 센터에 보낼 수는 없지만 한 부처에서 파견된 인력이 유관 부처 몇 개를 담당하는 방식의 파견인력 운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관계기관 협의체 활동 분석

복지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이 협의체 방식으로 업무협조를 논의하는 회의는 「복지재정 효율화」 관계기관 회의, 「국고보

조금 관리위원회」 회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방지대책 공동협의체」 회의 등 세 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 협의체 모두 상설협의체와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실무협의체 수준이 아니다. 실무적 차원에서 부정수급 신고를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치는 없다. 따라서 부처 중에서 복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실무자 수준의 협의체, 보조금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실무자 수준의 협의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부정수급을 신고하고 관리하는 실무자 수준의 협의체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

4. 가칭 복지비·보조금 부정신고처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

「신고센터」는 현재 복지비와 보조금의 부정수급 신고 처리를 하는 사실상의 허브 조직이다. 그러나 이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포털 시스템이 부재 상태이다. 복지비와 보조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준정부기관과 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 등 광범위하게 늘려 있다.

이 같은 방대한 조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정수급 신고 처리를 위한 포털시스템 기능이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타 시스템과의 적극적 연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개별 기관과의 정보 연계활용에 관한 발전방안

1) “부정신고처리시스템” 구축 이전

복지비와 보조금은 전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는 부정신고를 안내하는 「신고센터」의 화면이 떠 있지 않다.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광역자치단체에 협조 공문 처리를 하면 「신고센터」의 전화번호나 웹사이트 정도는 안내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처 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수 있지만 문제해결을 위해 칸막이 제거라는 정부 3.0 논리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정도로 아날로그 방식의 안내가 가능하다면 보다 적극적인 디지털 방식의 협조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안내하는 「신고센터」를 클릭하면 바로 「신고센터」의 웹사이트가 열리도록 하는 간단한 연계장치 활용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상태의 초보적 연계가 가능하다면 부정신고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미 있는 활용기반이 열린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부정신고처리시스템”의 구축 이전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기관과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활용하면 부정수급이 수급자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조직 전반에 대한 문제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부정신고처리시스템” 구축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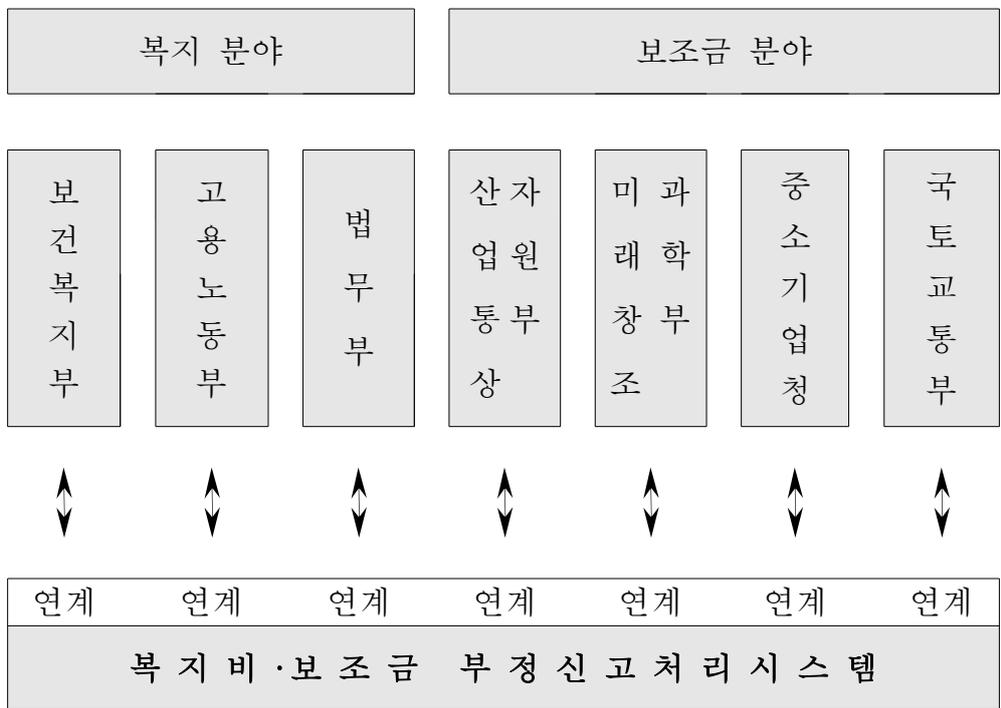
가칭 “복지비·보조금 부정신고처리시스템”이 구축되어 활용 가능한

단계에 이르면 개별기관과의 적극적 연계활용도 가능하다. 연계활용이 가능한 분야는 복지비 분야와 보조금 분야 모두를 포함한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수급자 정보, 어린이집 보육료지원 수급자 정보, 장애인복지 수급자 정보, 행복e음 수급자 정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자격자 정보 등으로부터 복지비 부정수급 관련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보조금 분야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RCMS),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등과 연계 활용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6-1> 개별기관과 연계활용 구조도



3) 부정신고처리시스템 발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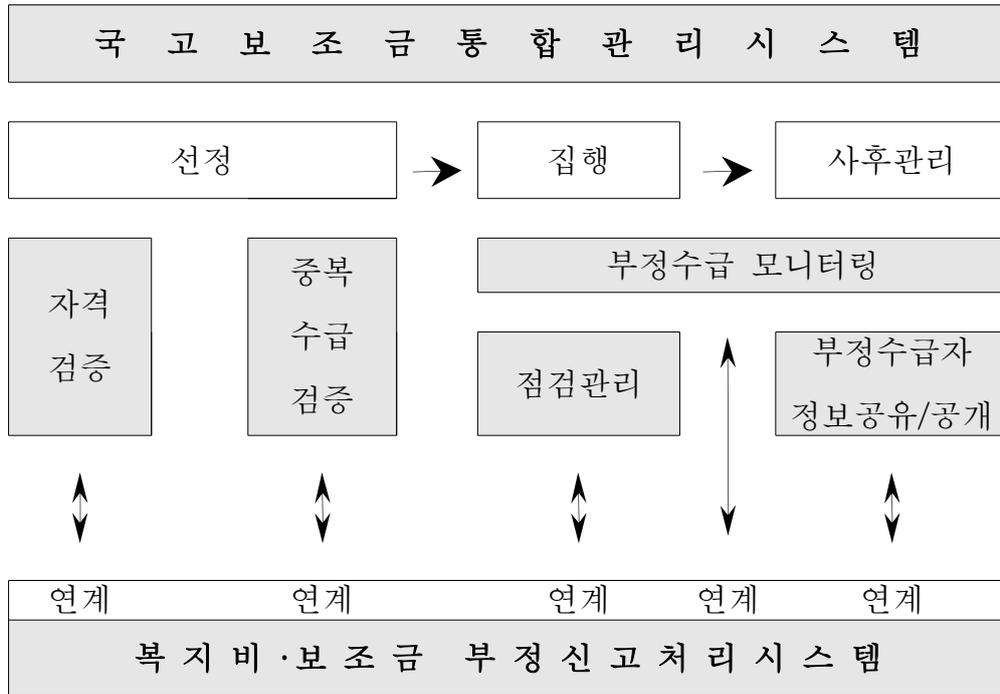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은 국고보조금을 관리하는 포털시스템으로서 기능은 하지만 복지비의 부정수급을 관리한다는 관점에서는 기능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부정신고처리시스템”은 장기적으로 복지비와 보조금의 부정수급 신고처리를 위한 포털 시스템으로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활용에 관한 발전방안

1) 연계 내용 및 방법

복지비·보조금 부정신고관리시스템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시스템 구축이 다음 단계로 필요하다. 연계시스템은 <그림6-2>에서와 같이 자격검증, 중복수급 검증, 부정수급 모니터링, 점검관리, 부정수급자 정보공유/공개 등 5단계에서 가능하다. 5단계 모두 한꺼번에 연계활용이 가능할 수 있지만 두 시스템 및 시스템 사용자 간의 원활한 소통이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정수급자 정보공유/공개를 우선적으로 연계활용 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림 6-2>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과
복지비·보조금부정신고처리시스템의 연계구조도



연계는 단기 수준에서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수준의 부분 연계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자격검증, 중복수급검증, 점검관리, 모니터링, 부정수급자 정보공유 및 공개의 전 과정에 걸쳐 연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

현재 국회에서 심의 과정에 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26조의3에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

사업자등의 선정 및 자격확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권익위가 정보를 제공받는 입장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견청취 등)에서 위원회는 부패방지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 등의 제출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에서의 한계

「신고센터」가 신고처리하는 업무는 복지비와 보조금을 포함하고 있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는 보조금이고 복지비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연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복지비에 대한 연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지비 외 보조금 분야의 부정수급처리시스템의 구축화 및 포털기능 수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7. 중장기 발전방안 로드맵

발전방안을 요약하여 중장기 발전방안 제안 사항으로 정리하면 <표 6-3>과 같다. 부정수급 신고처리 과정이나 홍보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부분의 발전 방안은 앞에서의 내용으로 대체하고 조직/인사, 가칭 복지비·보조금신고처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 그리고 타 부처와의 연계시스템 구축 및 활용으로 크게 나누어 중장기 발전방안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조직/인사 분야의 로드맵

조직/인사 발전을 위한 단기과제로서 우선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 명칭변경은 중장기적으로 복지비·보조금 부정수급의 신고처리를 위한 허브 조직으로 재구성된다는 전제하에서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의 명칭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신고센터」의 명칭변경과 병행, 또는 뒤를 이어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확보가 필요하다. 환수 결정액은 해당 기관에서 자체 감사결과 결정하는 것이어서 위원회에서 사건 이첩 후 기관 자체 감사 권한으로 조사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환수 추정액과 환수 결정액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고, 보수적으로 환수 추정액을 설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추정액보다 결정액이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직/인사의 단기과제로서 적어도 중앙부처의 실무자를 중심으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실무협의체는 연계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정지 작업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과제는 정부조직 체계상 총리실, 또는 기재부에서 주축이 되어 권익위의 부정수급 신고처리에 대한 적극적 협조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

로 보인다.

조직인사의 단기과제가 마무리되면 중장기적으로 전문성 확보와 안정적 인력관리를 위해 「신고센터」의 고유인력이 필요하다. 영국의 부정수급조사관(FIO), 캐나다의 자격심사관(ERO) 등은 「신고센터」의 고유 인력 확보를 위해 도입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과제가 마무리되면 부정수급 통합신고센터로 조직 개편일 필요하다. 인력확대로 인하여 조직은 적어도 지금보다 한 단계 격상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복지비·보조금 부정수급신고처리시스템 구축 위한 로드맵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은 보조금 관련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선제적 예방적 기능이 포함된 시스템이지만 복지비는 예외이다. 이 시스템 개발 관계자의 관점에서는 본격가동이 되면 보조금 중복 및 부정수급은 66% 정도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나머지 34%는 신고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복지비 부정수급과 34% 잡아내지 못한 보조금 부정수급의 신고처리를 할 수 있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수준의 복지비·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처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ISP와 BPR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시스템을 구축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연계시스템 구축·활용을 위한 로드맵

연계시스템은 아날로그 방식의 연계와 디지털 방식의 연계가 모두 필요하다. 조직/인사 분야에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일종의 연계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표6-3>에서와 같이 신고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단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계 방안은 복지비 및 보조금 관련 각급 기관의 홈페이지에 「신고센터」의 전화번호를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를 얻어내는 과제이다. 이 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신고센터」의 홍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급 기관의 홈페이지에 「신고센터」의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배너 혹은 칸을 협조 받을 수 있다면 동시에 또는 다음 단계로서 그 배너나 칸을 클릭하면 「신고센터」의 홈페이지가 열리도록 하는 간단한 방식의 연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이 연계장치만 마련되어 활용되어도 신고센터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단기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 자료 활용 수준에서 시작하여 모니터링 시스템과 같은 단계를 부분 연계한 후에 최종적으로는 보조금 분야에서의 부정수급 정보를 완전 연계하는 방안을 제기하고자 한다.

4) 로드맵의 최종 목적

이상 로드맵 상에 있는 과제가 완성되면 현행 복지·보조금 부정 신

고센터는 전문성이 확보된 조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며 복지비와 보조금의 부정수급 처리를 위한 통합신고센터로의 조직발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이 단계에서는 부정수급신고처리시스템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완전 연계가 구현되어 조직의 단위가 격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6-3> 「신고센터」의 중장기 발전방안 로드맵

분야	단기			중장기		장기
	명칭 변경	과건 전문 인력 확보	실무 협의체 구성 활용	안정적 인력관리 위한 고유인력 확보	통합신고센 터로 조직 재구성	
조직 / 인사						통합신고 센터로 조직발전
시스템 구축	부정수급신고처리 시스템 ISP와 BPR		부정수급신고처리 시스템 구축		부정수급신 고처리시스 템 활용	' 부정수급 신고처리 시스템과
연 계 시스 템	각급 기관 홈 페이지에 신고센터 전화안내	각급 기관 홈페이지에 원클릭 오픈 시스템 적용	국고보조금통합관 리시스템과 부분연계: 자료 활용 수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 스템과 완전연계	국고보조 금통합관 리시스템 완전 연계

제7장 결론

복지비·보조금 부정수급은 다양한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통합관리 차원의 접근법이 필요하다. 신고센터의 인적구성도 이 관점에서 재설계되어야 하고, 신고 접수 후 조사업무도 통합관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단순히 자료관리 차원의 관리방식에서 탈피해야만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다행인 것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 2017년 1월 부분개통, 7월 완전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과의 연계활용이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신고센터의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신고센터의 현재의 관리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한계는 보조금에만 집중되어 있고 복지비는 비껴나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을 「신고센터」에서 감당해야 한다. 따라서 가칭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활용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중간에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의 기관과 개별적인 연계활용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김효근·서희열. (2014). 정부고조금 사용에 대한 증빙제도 개선방안. 세무와회계저널, 15(1), 105-126.
- 보건복지부. (2016). 사회복지법인·시설 부정수급 사례집.
- 윤태섭·이삼주·김성주. (2016). 지방보조금 관리 및 평가체계 개선방향에 대한 제언. 지방정부연구, 20(1), 161-187.
- 임성일. (2012). 국고보조금제도의 과제와 개선방향. 지방재정, 2012권4 호, 6-21.
- 채준호. (2013). 영국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핑, 2013년 10월호, pp. 3-16
- Associated Press (AP), June 13, 1979, AM cycle, Compton, CA (available on LEXIS).
- Attorney-General's Department (AGD) 2008. *Prosecution policy of the Commonwealth*. Canberra: Australian Government.
- Button, M. (2011). Fraud investigation and the 'flawed architecture' of counter fraud entities in the United Kingdom.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Crime and Justice*, 39(4), 249-265.
- The 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 (ACCC). (2014). *Fraud Control Plan 2014-16*. Canberra: Australian

Government.

DeParle, Jason (2012), Welfare Limits Left Poor Adrift as Recession Hit, *The New York Times*, 7 April. Retrieved 19 November 2016.

Douglas, S., and Michaels, M.. (2004). *The Mommy Myth: The Idealization of Motherhood and How It Has Undermined All Women*. New York: Free Press.

Ekman, I. (2007). Sweden begins a crackdown on welfare fraud. *New York Times*, March 15.

Fuller, D., Ravikumar, B., and Zhang, Y. (2013). Who is concealing earnings and still collecting unemployee benefits? *The Regional Economist*, 2013(April), 12–13.

Fuller, D., Ravikumar, B., and Zhang, Y. (2015). Unemployment insurance fraud and optimal monitoring. *American Economic Journal*, 7(2), 249–290.

Hays, S. (2004). *Flat Broke with Children: Women in the Age of Welfare Refor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Henman, P., and Marston, G. (2008). The Social division of welfare surveillance. *Journal of Social Policy*, 37(2), 187–205.

Hessing, D., Elffers, H., Robben, H., and Webley, P. (1993). Needy and greedy? The social psychology of individuals who fraudently claim unemployment benefits. *Journal of*

- Applied Social Psychology*, 23(3), 226–243.
- Howell, D., and Azizoglu, B. (2011). Unemployment benefits and work incentives: The US labour market in the Great Recession.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27(2), 221–240.
- Kohler–Hausmann, J. (2007). “The crime of survival”: Fraud prosecutions, community surveillance and the original “welfare queen”. *Journal of Social History*, 41(2), 329–354.
- Kornfeld, R., and Bloom, H. (1999). Measuring program impacts on earnings and employment: Do unemployment insurance wage reports from employers agree with surveys of individuals? *Journal of Labor Economics*, 17(1), 168–197.
- Levi, M., and Burrows, J. (2008). Measuring the impact of fraud in the UK: Conceptual and empirical journey.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8, 293–318.
- Maki, K. (2011). Neoliberal deviants surveillance: Welfare recipients under the watchful eye of Ontario works. *Surveillance & Society*, 9(1/2), 47–63.
- Mosher, J. and Hermer, J. (2010). Welfare fraud: The constitution of social assistance as crime. In J. Mosher and J. Hermer. *Constructing Crime: Contemporary Processes of Criminalization*. pp. 17–42. UBC Press.

- Murray, C. (1984). *Losing ground: American social policy 1950–1980*. New York: Basic Books.
- Nicholson, W. and Needels, K. (2006). Unemployment insurance: Strengthening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ory and policy.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0(3), 47–70.
-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OIG). 2010. *Semiannual report to Congress, April 1, 2010–September 30, 2010*. Baltimor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 Prenzler, T. (2012). *Responding to welfare fraud: The Australian experience*.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 Reich, C. A. (1963). Midnight welfare searches and the Social Security Act. *The Yale Law Journal*, 72(7), 1347–1360.
- Swedish National Council for Crime Prevention (Brå). (2007). Unemployment benefit fraud: Motives, extent and preventive measures. English summary of BRA report No 2007:23. <https://www.bra.se/download/18.cba82f7130f475a2f1800023566/1371914733579/2007_23_unemployment_benefit_fraud.pdf>
- Swedish National Council for Crime Prevention (Brå). (2016). Fraud and economic crime. <<https://www.bra.se/bra/bra-in-english/home/crime-and-statistics/fraud-and-economic-crime.html#>>.
- Varma, K., and Ward A. (2014). Social assistance fraud and zero tolerance in Ontario, Canada. *Canadian Review of*

Social Policy, 70, 78–92.

van Stolk, C. (2014). The economic cost of social security frame and error. RAND Europe.

Wall, P. (1991). A survey of employment security law: Determining eligibility for unemployment compensation benefits. *Labor Law Journal*, 42(3), 179–186.